

국내입법의견조사 94-6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1994. 12.

연구책임자 이준우 (수석연구원)
공동연구자 김정순 (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1편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I. 문제의 소재	7
II. 각계의 입법의견	10
1. 정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10
2. 정보공개 청구권자	12
3. 정보공개 의무기관·의무	13
4. 공개대상 정보	16
5. 비공개정보의 범위(적용제외사항)	18
6. 공개거부의 구제제도(정보공개위원회)	27
7. 정보공개(청구)절차	33
8. 벌 칙	37
9. 공개를 위한 관련 체제	41
10.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42
III. 입법방향	45
1. 각계의견의 검토	45
2. 입법방향	50
〈참고 자료〉	
※ 정보공개법(안)의 사항별 비교표.....	56

제2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75
1. 최근입법의견 목록	75
2. 최근입법의견 요지	79
II. 주요입법예고법률안	122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 목록	122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 내용	124
III. 최신법령 목록	136

제 1 편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I. 문제의 소재

정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서는 정보공개 필요성과 기능에 대하여 국정운영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국민생활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따른 국민권의 증진 등을 들고, 도입배경으로서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주장과 투명한 공개행정의 필요, 정보의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관련정보의 수요증대, 행정과정의 국민참여 및 민주적 통제기반 제도화 요청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민주정치 강화, 행정의 민주화와 법치행정의 확보, 비밀행정 또는 은폐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부조리나 부정부패 방지, 책임행정의 구현 및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정활동을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이론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정보공개 운영을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가 국가와 국민간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추상적인 권리인 알 권리를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는 실정적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면, 알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구체적 내용, 권리행사의 절차,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구제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는 정보공개 실질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공개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보공개 실천을 위한 현실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준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거부가 결정된 경우의 구제방법 등도 중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정보공개 실질적 운영을 관리,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실효성의 확보는 도로에 그치고 말 것이다.

비공개기준에 대한 사전적 조정과 기속적 구체화,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사후적인 개선조치 등이 제도적·시스템적으로 확보되어야만 기본법으로서 제정될 정보공개법이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규정의 설정문제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크게 '정보의 공개'와 '정보공개제도의 관리' 및 '정보비공개'의 구체'라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1991.12.26.제112회 청주시의회 제6차본회의 재의결)를 제정한 이래 130여개 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총무처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1994.3.2.국무총리훈령 제288호)을 통하여 정보공개 제도화를 위한 시도를 행함으로써 최근에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총무처가 주최한 공청회 등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시안, 민주당, 경실련,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보공개법(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시안외에도 이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어떠한 내용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관한 외국 입법례의 분석은 이미 여러 문헌에서 행하여졌고¹⁾, 이를 참고하되, 다양하게 시안과 의견 및 판례 등의 형태로 제기된 정보공개법의 제정의견을 검토·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보공개법을 마련하는 과제만 남겨져 있다.

정보공개법의 쟁점은 기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제도의 관리」 및 「정보공개거부의 구체」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연구는 박영도,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2, 3~15, 27쪽; 박영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2, 471~476쪽; 김대현, "정보공개와 국가비밀 - 미국의 국가비밀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입법조사월보』 1988.11., 37~56쪽; 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프랑스 정보공개법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영남대), 1991; 변재욱, "미국의 정보자유법의 운용상 문제점", 『현대의 공법이론』(김도창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82; 강철선, "정보공개제도화 방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884.7.19)자료집, 17~35쪽 등 참조바람.

정보의 공개에는 ①정보공개 청구권자, ②정보공개 의무기관, ③공개대상 정보, ④비공개정보의 범위 등이 주요 논점이다.

정보공개거부의 구제에는 ①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절차(불복절차), ②청구인, ③청구인의 조치의무 (사전고시의무, 공개여부 결정기한(거부간주), 사전협의, 통지의무), ④불복구제절차 등이 주요 사항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의 관리는 ①관리기관의 형태와 지위 및 구성, ②정보공개에의 구체적 운영기준의 확립과 사전 조정, ③정보공개의 실태조사와 보고, ④정보공개의 운영에 대한 개선과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일반원칙과 기본방향의 설정을 전제로 하되, 이상의 제 쟁점을 중심으로 총무처, 민주당,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정보공개법(안)을 비교하고, 공청회·토론회 및 각종 문헌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입법의견을 함께 분석·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공개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은 여러 문헌에서 이미 행하여졌기 때문에 이를 직접 분석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서술은 위의 세 가지 부문적 관점에서 총무처의 시안 규정 순서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1)정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피고, 2)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①정보공개 청구권자, ②정보공개 의무기관·의무, ③공개대상 정보, ④비공개정보의 범위(적용제외사항), ⑤정보공개청구절차를 고찰하며, 3)정보공개거부의 구제와 관련하여 공개거부의 구제제도(정보공개위원회)를 살피고, 4)정보공개제도의 관리와 관련하여, ①벌칙, ②공개를 위한 관련 체제, ③정보공개와 국가기밀, ④비공개문서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입법의견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이를 종합하여 입법방향으로서 바람직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각계의 입법의견

1. 정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1987년 11월 28일 폐지된 언론기본법과 같은 단일 공개법이라도 그 내용이 공개제도화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정부의 비밀을 수호하여 밀실행정을 계속시켜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성은 커녕 이에 역행하여 닫힌 공동체로 변질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 정보공개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에 수권된 공개제도화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정보공개법 제정에 급급하여 불완전한 단일법이 제정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을 제정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럼으로써 전사회적으로 정보의 공개적인 유통체제가 확립되어 정보에 대해서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법시행 국가의 경험에서 볼 때 부패한 사람이나 집단은 소멸되어 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오늘날 틀린 정보나 부당한 정보제공에 기인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보공개법인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법제정을 하는 것이 한국적 설정기준이 되리라 본다(강경근, “민주당 「정보공개법률(안)」발의의 의의와 쟁점”, 민주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94.7.19), 51쪽).

○ 김학수(서강대교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토대가 되는 언론의 취재권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하다. 이는 언론의 오보와 비윤리행위를 감소시키는데도 절대적이다(김학수, 경실련 주최 『열린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 12.19) 토론발표).

○ 박종구(청주시의회 의원)

청주시의회는 지난 91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정보공개조례를 확정했다.

조례의 발의에서 확정에 이르는 5개월여 동안 행정당국의 거부감과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최초로 제시된 원안이 크게 변질되어 조례제정의 의의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박종구, 경실련 주최 『열린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방향』 공청회(1994.12.19) 토론발표>.

○ 이세용(언노련 사무처장)

정보공개법은 현재 언론이 보이고 있는 대북관련보도의 제약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반 국민들이 얻은 정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이세용, 경실련 주최 『열린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토론발표>.

○ 장호순(한국사회교육원)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2차대전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66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뒤 74년에 한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가장 많은 정보공개요청을 한 집단은 기업체들이고 언론기관의 이용빈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장호순, 경실련 주최 『열린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토론발표>.

○ 체신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DB구축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중에 체신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공공부문의 보유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공개법”의 조기제정을 추진한다(체신부, “정보화촉진을 위한 DB산업 육성대책”, 1993.8.19).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정보공개 대상이 될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대부분 위임하고 있다. 정부시안이 비공개사유를 여덟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나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공개 거부의 빌미로 악용될 소지가 짙다<홍준형,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94.12.19) 토론발표>.

2. 정보공개 청구권자

총: 국민, 외국인(대통령령에 위임)(안 제6조)			
민: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제4조)	공: 국민, - (제2조)	행: ○(제5조)	경: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제4조)

- ※ 총무처시안: 총, 민주당안: 민, 한국공법학회안: 공, 한국행정연구원안: 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안: 경, ○: 총무처시안과 동일함, △: 총무처시안과 유사, ☆: 총무처시안과 전혀 다름, -: 해당규정 없음(이하 비교표상의 약칭 및 표시는 동일)
- ※ 현재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11개국 중 내국인과 차별없이 외국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뿐임.

○ 총무처

국민이면 누구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 도면, 필름,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국내거주기간 등 별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정보접근은 차단할 방침임(총무처 시안, 국민 94.12.21., 2면, 세계일보 94.12.22., 3면).

○ 김만기(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본 법안(민주당안)에서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도 포함시켜 상당히 전향적인 규정을 하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3년 이상 국내 계속 거주자에 한정하고 있는 취지가 분명치 않다. 기왕 외국인을 포함시켜 국제화·세계화의 흐름에 맞추는 이상 몇몇 선진국의 경우(미국, 스웨덴)에서처럼 거주기간에 의한 제한까지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김만기, “정보공개법률(안)에 대한 의견”, 민주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

19) 토론발표문, 67~68쪽)

○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국민의 개념에 법인과 등록단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해야 하며, 미성년자도 의 사능력이 있을 나이인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유승삼, 민주당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19) 토론 요지문, 77쪽>.

○ 세계일보 사설

정보공개는 국가기밀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총무처가 최종 확정된 시안은 비공개 사유를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비밀로 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비공개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공공기관의 비공개주의를 합법화해 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위해 비공개할 기밀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인의 명확한 인식이 가능한 범위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밀과 연관된 현행의 각종 법체제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기관과 분야마다 정보공개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의무를 지게 되는 공공기관의 범주를 공공의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세계일보 94.12.22., 3면).

3. 정보공개 의무기관 · 의무

총: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기관(공공기관)(제1조) ②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제2조제3호)			
민: △(제5조)	공: 행정기관(안 제103조)	행: △(제2조제1호)	경: △(제5조)
민	기타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출연에 의해 설립된 각종 연구기관, 기타 공공단체 중 행정권이 부여되고 공중의 관심이 되는 정보를 통제하는 기관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관
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경	기타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에 의해 설립된 각종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감독원은 제외한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각급학교(제1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제2호), 특수법인(제3호),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제4호).

○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한국적 현실에 있어서 국회나 법원의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취지의 규정의 삽입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강경근, “민주당 「정보공개법률(안)」발의의 의의와 쟁점”, 민주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19) 주제발표문, 56쪽>.

○ 경실련

공익기업이나 공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이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경실련, “정보공개훈령에 의한 청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공청회(1994.12.19) 자료집, 35~37쪽>.

○ 법률신문 사설

공개청구의 대상기관에 행정부문만 아니라 입법, 사법부도 포함시킨 것은 좋으나 국민이 일반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행정인 만큼 특히 행정부에 포괄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가능한 한 법에서 확정지었으면 한다. 시안에서는 한

정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법률신문 94.12.22., 2면).

○ 성낙인(영남대 법대 교수)

원래 정보공개는 행정정보공개가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제의 일반적인 경향은 행정정보공개법의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입법행정 및 사법행정도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개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총무처 시안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기관까지 포괄하고 있다.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주는 시행령에서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까지 가급적 확대할 필요가 있다(프랑스에서는 공역무를 관리하는 모든 사법인도 정보공개 의무를 갖는다. 예컨대 사회보장금고, 국영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에어프랑스, 성인직업훈련협회, 농업사회공조협회 등을 들 수 있다)<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1994.12.21) 주제발표문, 24쪽>.

○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보공개 의무기관에 행정부외에 입법부와 사법부도 포함시켜야 한다(유승삼, 민주당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19) 토론요지문, 77쪽).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 (총무처)시안이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한 것은 좋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개방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보다 엄격히 ‘법률에 근거가 있는 때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아울러 정보공개 원칙을 정보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의 해석·적용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의무중 정보·자료의 분류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임의적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정보공개법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

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12쪽).

- (총무처)시안이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외에 이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현재 공기업민영화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서 사정상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법적 명확성면에서나 법치국가원칙에서 요구하는 입법의 규율밀도(Regelungsdichte)와 관련하여 볼 때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각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명확히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임의 범위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총무처가 첨부한 각국에서의 입법실태를 보아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이에 관하여는 경실련안과 민주당안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11쪽>.

4. 공개대상 정보

총: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제2조제1호)			
민: △(제6조)	공: ○(제4조)	행: △(제2조제2호)	경: △(제6조)
※ 행: ...마이크로 피슈, 음반, ...데이터베이스 기타 일체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			
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서, 사진 및 마이크로필름, 녹음테이프, 컴퓨터에 의한 자동데이터 처리를 위한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			
경: 공공기관 등이 작성,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문서 외에 '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제6조)			
행: 공공기관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문서 등 기타 일체매체에 기록된 「사항」', (제2조제2항)			

○ 경실련

공개에 청구에 문제로 되는 것은 정부가 公刊하지 않은 내부자료를 공개하는 문제이다. 이제까지 내부논의자료가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들에 대한 공개도 검토해야 한다<경실련, “정보공개훈령에 의한 청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37쪽>.

○ 구병삭(전 고려대 법대 교수)

개개인의 생명, 건강 및 심신의 안전, 공공사업에 대해서 그 계획의 결정, 기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와 기록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며 거부해서는 안된다.개개인은 문서화된 정보획득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그 문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구체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구병삭,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공법연구』 제17집(1989년), 한국공법학회, 13~14쪽>.

○ 성낙인(영남대 법대 교수)

문서가 지칭하는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서 서류, 보고서, 연구서, 합의서, 의견서, 통계자료, 예측서, 결정서, 회람, 지시 및 법률의 해석과 행정절차의 기술을 담고 있는 관계부처의 답변서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관련된 법률로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1994.12.21) 주제발표문, 25쪽>.

○ 이세용(언노련 사무처장)

진산화된 내용도 공개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의 과다 내지 남용으로 인한 인력·예산의 과다소요문제는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홍보비의 10%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보비의 삭감으로 가능하며, 행정정보의 공개로 공보행정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세용,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토론의견>.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공개 개념에 공공통신망에 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접근보장을 '공개'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문·잡지 등 일반자료나 일반인에게 특정한 절차없이 자유로이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제외시킨 것은 가령 공공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의 공개를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시안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입법적 불비의 하나이다. 개인용컴퓨터 등으로 공공통신망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이나 정보공개는 널리 허용되어야 하며 이 점을 명시하든지 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비상대책 기획및지역사회의알권리에관한법률(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EPCRA)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공공기관이 손쉽게 중앙전산망에 접근하여 근소한 비용으로 검색·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예외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12·18쪽).

5. 비공개정보의 범위(적용제외사항)

○ 법령상 비공개정보

총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7조제1항제1호)
행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사안을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정보(제8조제10호)
경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령이 사항을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제7조제1항제2호)
민	법률 또는 법률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특정적으로 공개를 면제한 사항(제7조제1항)
공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면제된 정보(제5조제1항제6호)

- 국가안전정보: <경(제7조제1항제1호), 행(제8조제1호), 민(제7조제1항제1호), 공(제5조제1호)>
 - * 민: 다만, 비공개로 하는 뜻을 지정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정보는 제외
- 개인프라이버시정보: <경(제7조제1항제6호), 행(제8조제2호), 민(제7조제1항제6호), 공(제5조제4호)>
 - 예외: 개인이 공개에 동의한 사항에 한정(경,민). 그외에 ①법령상 일반에 공표되거나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인·허가과정상의 취득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그와 같이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행)>
- 기업 등 단체의 영업정보: <경(제7조제1항제7호), 민(제7조제1항제7호)> / 개인의 영업상의 정보도 이에 포함 비공개<행(제8조제3호), 공(제5조제5호)>
- 공공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정보: <경(제7조제1항제4호), 행(제8조제5호), 민(제7조제1항제4호), 공(제5조제3호)>
- 의사결정과정·정보나 다른 기관과의 의견교환 및 제공의 목적을 위한 정보: <경(제7조제1항제5호, 행(제8조제6호), 민(제7조제1항제5호)>
- 범죄수사정보: <경(제7조제1항제3호), 행(제8조제4호), 민(제7조제1항제3호), 공(제5조제2호)>
- 공공기관의 규제·감독·검사·시험·입찰계약 계획의 수립 및 첨단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행(제7조제1항제8호)
- 공공기관 상호간의 신뢰관계나 협력관계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제7조제1항제7호)

○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 일반조항으로서 법령에 의한 비공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법령의 형식을 빌어서 공공기관의 비공개에로의 도피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다. 법령을 통하여 개별적·특정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강경근, "시론", 시민의 신문, 1994.10.29, 3면).

- 비공개 정보는 특정화시켜 열거한다. 국가비밀·기업비밀·개인프라이버시 등을 중심으로 법령 비공개나 기관 내부정보 등에 한정시켜야 한다. 기업비밀과 관련된 역소송(정보보전소송)이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관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

시험이라든지 입찰계약 내역 등의 정보는 그 내용으로 된 사항이 완료된 후에는 공개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상호간의 신뢰관계나 협력관계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하는 행정연구원의 입장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광범한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강경근, “민주당 「정보공개법률(안)」 발의의 의의와 쟁점”, 민주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 7.19) 자료집, 50쪽>.

- 국가안전정보 등의 ‘국익정보’가 비공개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과도한 비밀지정의 근거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 내지 폐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법은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본다.

더군다나 ‘공익정보’에 대해서 보면,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역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반조항(안 제7조제1항제1호)이 있기 때문에, 명령제정권이 있는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이 제한없이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의 스탬프를 찍으면 아무리 국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국민이 알아야만 되는 정보라도 얻을 수 없게 되어 이 법안은 자칫 ‘정보보호법’으로서의 기능만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비밀 지정의 행정부 재량을 제한할 조항이나 문구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정당하게’ 비밀로 지정된 정보만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의 ‘명령’은 본래의 뜻과 관계없이 상명하복식의 직무명령으로도 혼동할 염려가 있으니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으로 고쳐야 하겠다.

국민의 ‘생활’에 해가 되는 정보의 비공개규정(안 제7조제1항제9호)도 너무 광범하다. 정책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공개된다는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범죄의 소추, 집행에 관한 사항도 비공개(안 제7조제1항제4호)로 되는 바 지금의 소송과정에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사정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게 된다<강경근, “정보공개법 제정논의과정과 그 검토”, 경실련 주최 『열린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7쪽>.

○ 구병삭(전 고려대 법대 교수)

국가·공공단체가 수집한 기업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업비밀에 속한다고 하여 모두 공개를 예외로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생존권 등 제권리와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공개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해, 환경관리 행정의 공개가 요구된다.

문서를 어떤 경우에 공개하느냐의 판단이 공무원에게 위임된 경우, 그 공무원은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관내의 부정·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를 비공개하기 쉽다. 그러므로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를 정함이 바람직하다.

비공개는 국가기밀, 프라이버시, 기업비밀 등이 되겠으나 이에 대한 한계와 범위 또는 해제도 아울러 자세하게 규정하고, 특히 기업비밀보호의 逆訴法 즉 정보보전소송법도 동시에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구병삭,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공법연구 제17집(1989년), 한국공법학회, 13·30쪽).

○ 김만기(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정보공개의 적용제외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이 문제이다. 본 법안(민주당안)에서는 적용제외사항을 7~8가지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규정하기 보다는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용제외사항들을 ‘명령적 적용제외 (mandatory exemption)’사항과 ‘재량적 적용제외(discretionary exemption)’사항의 양자로 나누어 각각 제시함이 이를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명령적 적용제외 사항(안 제7조제1항제2·6호)에 호주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입수한 정보 등도 포함시킴이 좋을 것이며, 재량적 적용제외 사항(안 제7조제1항제1·3·5·7호)은 법의 본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함이 옳다고 본다(김만기, “정보공개법률(안)에 대한 의견”, 민주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19) 토론발표문, 68쪽).

○ 김철수(서울대 법대 교수)

공개제외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나열적이고 포괄적이다. 국가기밀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상 「형성중인 정책」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조선일보 94.10.13., 3면).

○ 성낙인(영남대 법대 교수)

국익이나 공익의 필요성에 따라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의 법제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서 국가비밀사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의 최대한 보장에 있다면 국가기밀의 존재이유가 국익보호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인식이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련의 법체제를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법안심의과정에서 삭제한 부분이긴 하나 행정실무 차원에서 '기타 공개될 경우 당해업무의 목적을 해치거나,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10호로 삽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망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최종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주최 『정보공개법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주제발표문, 29~30쪽).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시안은 제7조의 규정에서 비공개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할 우려', '중대한 이익', '상당한 이유', '현저한 지장', '정당한 이익' 등과 같은 불확정법률개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된 이러한 「특별한」 정보중 국가의 안전이나 범죄의 예방에 관한 대목 등은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법에서 최대한 이를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안은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지나친 포괄성과 '이현령비현령'식의 자의적인 악용가능성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현실적으로 비공개행정, 밀실행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배제하는 기준으로는 '막연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안 스스로 원칙으로 삼은 정보공개 원칙 대신 비공개원칙에 의해 정보공개가 실시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안 제4호의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은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는 기준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막연한 기준보다는 오히려 '형사절차의 진행중에 당해 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 분야에 관한 한 사실상 정보공개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킬 수 있는 독소적 요인이다. 우선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제외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극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제7조제1항제9호의 영업비밀 관련사항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개념보다는 법인 등의 '기업 및 영업상 비밀'이란 개념을 사용했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기준보다는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야 할 것이다.

시안은 비공개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공개사유를 지나친 광범성·불명확성으로 인해 직면할 문제들의 해결을 법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비공개사유는 대폭 제한되어야 하며 또 그 규정도 더욱 명확하고 엄격한

개념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안 제7조가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 한한다는 일반적 제한규정을 두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13~15쪽>.

○ 국민일보 사설

국가기밀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 또 국가기밀은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포괄적 국가기밀」은 권위주의시대 집권세력의 「위헌적 통치수단」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국민일보 94.10.13., 3면).

○ 법률신문 사설

적용제외대상정보의 규정방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칫 이 시안은 비공개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공익정보의 공개는 특히 그 정보에 관계되는 단체나 개인 등의 내부적 사항이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수정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 규정방식도 보다 특정화시켜야 한다. 막연히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법령 비공개사유도 그것이 정당하게 비공개로 된 경우에만 적용제외사유로 해야 하리라 본다(법률신문 94.12.22., 2면).

○ 세계일보 사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해석됨으로써 공개거부를 합법화해 주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국가기밀과 개인의 사생활정보,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물론 안된다.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목록을 따로 작성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보공개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보독점이나 정책결정 영향력을 갖고 있던 관료나 기득권 세력들이 정보공개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비밀정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개해야 한다(세계일보 94.10.14., 3면).

○ 조선일보 사설

긍정적 의미로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곧 국민들이 유리창을 통해 정부정책을 환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는 「유리창 행정」을 실감할 수 있는 「정보실명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안은 이런 좋은 명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9개항으로 된 공개제외대상 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어 자칫하면 「예외」규정이 법안의 본질 자체를 흐리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 보호」, 「법인과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그 범위 자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법안에 명기된 문구도 아직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 국방, 외교관계 등 국가이익 침해 정보」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공개를 거부할 정보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질 수도 있는 「합정」을 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의 근간은 「행정부는 개인의 청구에 대해 그가 점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틀 자체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조선일보 94.12.22., 3면).

○ 중앙일보 사설

안타깝게도 21일 발표된 정부의 최종시안은 심의회의 안보다는 물론 지난 10월에 발표되었던 1차시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행정의 비밀주의와 편의주의, 그리고 보신적 관행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22일 공청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했듯이 정부의 시안에는 공개제외대상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게다가 그 제외규정들은 하나갈

이 포괄적이고 막연한 표현들로 되어 있어서 공개대상 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선 자의적인 정보비공개까지도 합법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법이 왜 대통령의 공약사항까지 되었는데 다시 성찰해 대폭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불필요하게 많고 자의적인 규정들로 점철되어 있는 수많은 비밀보호법과 규정들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설사 정보공개법이 1백% 이상적인 것이 되어도 정보공개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중앙일보 94.12.22., 3면).

○ 한국일보 사설

제도의 오·악용으로 빚어지는 역기능을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시안에서도 공개금지사항이 명기되었으나, 특히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은 행정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함께 제정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가 제도만 도입했다고 선진행정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여전히 독선적, 권위주의적 자세로 요구자료를 거부 내지 기피할 때 이제도는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게 틀림없다. 과감하게 알려 심판을 받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한국일보 94.10.13., 3면).

○ 대법원

행정기관은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는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공개를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특별2부 92.6.23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의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 대법 89.10.24판결, 88누9312).

○ 헌법재판소

〈정보개시불허와 알 권리〉

-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정부보유정보의 개시요구에 대해 이해관

개인인지 여부 및 타인의 사생활 등 공익을 침해할 소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검토없이 불허하였다면 이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헌재 89.9.4결정, 헌마 22).

〈군사기밀보호법의 위헌여부〉

- (한정합헌 결정):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대상 영역을 가능한 최대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무효인 정도는 아니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온당하다.

- (전면위헌의견: 변정수 재판관):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 도대체 어떠한 사안이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 (단순합헌의견: 한병채 등 3명): 군사기밀보호법은 국가기밀의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 (참고인진술: 김일수 고려대교수): 국가안전보장 등 일부 불분명한 문언과 결합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

- (참고인진술: 신동운 서울대교수): 군사상의 기밀을 규정한 이 법 제2조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없어 언론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과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2.25 결정 군사기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사건).

6. 공개거부의 구체제도(정보공개위원회)

〈불복심사 기관 대비〉

시안	인원	필요적 구성원의 수와 자격자	임기	신분보장	정족수
총무처	5~7인	민간인, 3급이상 공무원인 자나 이었던 자	3년1차 연임	해당기관규칙 대통령령	재적과반수

시안	인원	필요적 구성원의 수와 자격자	임기	신분보장	정족수
민주당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법률적 또는 행정적 지식과 경험, 인격과 식견을 갖춘 자	4년1차 연임	정보공개법	-
경실련	15인	10인 이상의 판·검사·변호사 자격자, 조교수 이상의 자나 이었던 자	6년1회 연임	법원조직법의 예에 따름	재적2/3출석 출석 과반수
행정 연구원	5인	- 3인 이상의 판·검사·변호사와 조교수 이상의 자나 이었던 자 - 정보공개심판에 관한 지식·경험있는 공무원 또는 이었던 자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정함	좌 동	좌 동
공법 학회	9인	- 법학적 소양을 갖춘 관계 전문가 -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대통령령으로 정함	좌 동	좌 동

※ 민주당(안)은 '정보공개위원회'제도 대신 '정보민원감찰관'제도를 채택하였음(안 제 6장 제18조~26조, 제8장 제33조~42조 참조).

〈불복심사기관의 형태〉

○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 법원에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심으로서 위원회제도를 택할 때는 그 구성원이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불복 심사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소망스러운 것은 정보 읍부즈만의 설치이다(강경근, "민주당 「정보공개법률(안)」발의의 의의와 쟁점", 민주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94.7.19) 자료집, 50쪽).

○ 구병삭(전 고려대 법대 교수)

구제방법으로서 법원에 정보공개소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외에 Ombudsman의 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 같다<구병삭,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공법연구 제17집(1989년), 한국공법학회, 42쪽>.

○ 성낙인(영남대 법대 교수)

원래 법안 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 전체를 통할하는 하나의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법, 행정, 사법 3부에서 각각 추천하는 인사와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각부에 각기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다만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을 제도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1994.12.21) 주제 발표문, 36쪽>.

○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관청의 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로서 현재 운용중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신각철, 총무처 주최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1994.12.21) 토론발표; 서울신문 94.12.22., 2면>.

○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민주당안의 정보민원 감찰관제도(옴브즈만제도)는 정보공개 심판위원회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①친숙하지 않는 제도, ②공정성 보장 미흡, ③법적 구속력 미흡, ④행정기관의 신뢰 얻기 곤란, ⑤행정심판과 중복 가능성을 들 수 있다<유승삼, 민주당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19) 토론요지문, 78쪽>.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총무처 시안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하다. 이에 대안으로서 각 정보공개위원회를 불복심사에 대한 구속적 재결권을 지닌 심판기관으

로서 조직하되, 각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위원장들에게 각각 정보공개음부즈만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들로 구성된 국가정보공개위원회(가칭)가 정보공개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수립, 정보공개의 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심의·권고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이 기구는 정보공개상황과 그 기구의 업무수행전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며(백서·출석보고 등의 형식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책임을 지는 독립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홍준형, “정보공개법 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20~22쪽).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정부시안에는 정보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했을 경우 구제를 담당할 정보공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특히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이 위원회의 위원수가 5~7인으로 축소되었고, 위원회구성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다. 더구나 정부시안은 위원회를 각 헌법기관마다 설치, 헌법기관의 장이 권고적 효력을 지닌 위원회의 결정을 과연 따를 것인지 의문이다(강경근, “정보공개법 제정논의과정과 그 검토”,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5~6쪽).

○ 이세용(언노련 사무처장)

시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개악된 것이 유감이다.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주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구성도 비민주적 운영의 예가 많은데 다원적 구성은 비민주적 운영이 극심할 것이다. 상설위원회로의 설치가 어려우면 보좌관제도나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다(이세용,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토론발표).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정보공개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시안(총무처)제15조는 우선 ‘민간인’이란

용어가 법률용어로는 부정확하므로 이러한 용어를 피하면서 동시에 그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3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일괄적으로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직무사정에 대한 근접도를 감안하여 3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2년미만인 자로 이를 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시안이 '비공무원'과 공무원 및 공무원경력자간의 구성비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구성비율의 문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따라서 위원회를 막연히 5~7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중 공무원이나 공무원경력자의 수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시안은 위원의 임기만 규정할 뿐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문제이다. 위원의 임명권자나 위원장의 임명방법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이를 당해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현직공무원은 그 조직상의 관계 때문에 독립적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현직공무원은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은 현실적으로 당해 기관의 장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째, 시안은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항목이다(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22~23쪽).

○ 법률신문 사실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기존 행정심판위원회보다는 진전된 것이나 그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장치가 없다(법률신문 94.12.22., 2면).

○ 세계일보 사실

정보공개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공개거부할 경우 부당성여부를 심사할 위원회가 관련기관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정보의 공개여부를 행정부 자의로 결정한다면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정보위의 구성과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보공개위의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권고조항으로 한 것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할 것이다(세계일보 94.12.22., 3면).

〈불복심사절차와 효력 기타〉

○ 김만기(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정보공개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불 때 불복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기간 3개월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단축됨이 옳다고 본다(김만기, “정보공개법률(안)에 대한 의견”, 민주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19) 토론발표문, 69쪽).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 심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시정조치의 권고와는 달리 구속적 결정이므로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유한 흠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면 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라든 몰라도 항고소송으로는 제기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문제는 시정조치의 권고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심사청구절차를 통해서 주어져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심사청구제도를 통하여 법원의 소송부담을 감소시킬 여지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홍준형, “정보공개법 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26쪽).

- 정보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행정소송제도가 「假救濟制度의 불비와 행정상 이행소송의 부인」이라는 중요한 결함을 지닌 제도인 점에서 여러가지 요인들이 결국 정보공개에 관한 권리구제에서 요구되는 신속성을 저해함으로써 정보공개소송이 오히려 정보공개에 관한 불복구제수단이기는 보다는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거나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사보타지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우려를 낳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관한 불복절차는 현행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차원에서 정보공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한 규율을 행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쟁송법의 보충적 적용을 인정하는 데 그쳐야 한다.

-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시안이 드러낸 또 하나의 문제는 '역정보소송'(Reverse FOIA Suit)내지 '정보보전소송' 등과 같은 정보공개방지를 위한 불복절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보공개법은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보호가치있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나아가 정보의 취득·보유·유통 등에 관한 통일적 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로서의 기능도 갖는다. 시안은 공개여부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과정에서 제3자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시안 제9조제5항) 그 이후단계인 불복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방어권보장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미 내려진 공개결정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취소해 보았자 그것은 집행정지나 가구제절차가 충분치 않은 이상 허사가 되고 만다.

대안으로 정보공개심판과 정보공개소송 두 가지 단계에서 모두 제3자에 의한 예방적 쟁송의 제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첫째 정보공개심판에서는 심판기관의 제3자에 대한 통지의무 및 제3자의 심판참가권 인정, 직권 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비공개심리, 둘째 정보공개소송에서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의 제3자 통지의무, 제3자의 소송참가권 인정 및 직권 내지 신청에 의한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27~29쪽).

7. 정보공개(청구)절차

정보공개(청구)방법(총무처안 제8조)
①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민: ○서면신청 / 공: 시행령에 위임 / 행: ○ / 경: ○ >
②청구정보의 특징: 총·공: (해당규정 없음)

<p>민: 보유기관이 상당한 노력을 하면 확인가능한 정도(제1조제2항)</p> <p>행: 해당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제10조제1항)</p> <p>경: 공개청구된 정보의 특정 및 사용목적(공개청구서에 기재)(제8조제2호)</p>

<p>공개여부의 결정(총무처안 제9조)</p>
<p>①공개여부 결정기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결정, 서면통지의무 <민: 10일이내 / 공: 2주이내 / 행: 7일이내 · * 14일 이내 / 경: 2주안에 > * 행: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결정을 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단서).</p>
<p>②결정기간의 연장: 30일 한도, 연장이유의 서면통지 <민: ○ / 공: 2주일 범위 / 행: 청구일로부터 60일이내 / 경: 1회 2주이내 ></p>
<p>* 연장사유: (총) 부득이한 사유 (민) 다수의 정보요구, 다수의 정보중 검색필요, 명백히 법정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 혹은 협의가 필요할 때 (공) 정당한 이유 (행) 상당한 이유 (경) 상당한 이유</p>

○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정보공개법 제정논의과정과 그 검토”,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8쪽).

○ 강철선(민주당 국회의원)

우리의 경우 정보공개 실시기관별로 정보공개 전담기관(합의제적 공개심의기관, 예 정보공개심의회)을 부속기관으로 두고, 실시기관 산하의 실 또는 과에 정보공개담당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철선, “정보공개제도화 방안”, 민주

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방안에 관한 토론회』(94.7.19) 발표문, 34쪽).

○ 경실련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공개 및 비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15일의 기간은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에 지나지 않으며, 공개를 실제로 받는 기간은 20일에서 25일정도가 걸렸다. 총무처의 법시안을 보아도 국무총리훈령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기간보다 더욱 축소되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욕구는 시간을 다투는데 1달여의 기간은 정보의 가치를 현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정보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현재보다 공개여부결정기간 및 자료입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교통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공개여부가 불투명한 공개청구를 위해서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따라서 전화·우편 그리고 팩스접수가 가능하도록 훈령의 별지서식란은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령제정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창구의 운영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현재 창구에 가게 되면 담당부서의 정보목록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규정집도 있지 않다. 창구는 있으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외한 자료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내규와 규정집은 많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므로 특별히 이들에 대한 공개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을 매번 공개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목록과 규정집 그리고 주요한 자료를 비치해 놓은 장소가 있어야 한다. 현재 많은 부처에 있는 자료실과 정보공개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이외에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 보유하지 않는 경우(자료없음)와 다른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경우(이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경실련, “정보공개훈령에 의한 청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35~37쪽>.

○ 김만기(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해당정보 보유기관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문제로서 정보공개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연장기간 30일 이내를 10일씩 나누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매번 연장시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함이 좋다고 본다(김만기, “정보공개법률(안)에 대한 의견”, 민주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19) 토론발표문, 68쪽).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시안은 짧게는 45일까지 길게는 60일까지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셈이 된다. 비공개결정에 대한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최대 135일에서 150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심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판결까지의 기간이 추가된다. 구제절차의 장기화는 현대정보사회에서 급속하고 대량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특질에 비추어 볼 때 정보의 가치나 신선도를 떨어뜨려 정보공개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언론은 당초의 국무총리훈령에 대해서도 이구동성으로 이 점을 비판한 바 있는데 이는 현대정보사회에 있어 정보의 시기적 특성을 감안하면 극히 당연한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다(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16쪽).

- 시안은 다수인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았다.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또 국정에 관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는 독일 환경정보공개법(UIG) 제6조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동일내용의 정보공개신청이 50인 이상 연명의 서명 또는 동일문안을 복사한 형태로 서명 제출한 신청은 공동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19쪽).

○ 세계일보 사설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하나로 전화·우편뿐만 아니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청구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세계일보 94.12.22., 3면).

8. 벌칙

벌칙(총무처안 제7장 제32조 내지 제34조)

- ①비공개정보의 타인 제공행위: 비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제공받은 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적용제외대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양벌규정: 법인, 개인(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게도 벌금 과함
- ④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 아닌 자 또는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비공개정보의 공개관련 벌칙(총무처안 제32조)

<민: - / 공: - / 행: - / 경: - * >

민: 비공개정보의 제공관련 벌칙은 없음. 정보민원감찰관제도와 관련된 직무수행 방해죄, 불출석죄, 위증죄 등의 규정이 있음(제46조 내지 제49조).

행: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28조). 비공개정보의 제공관련 벌칙은 없음.

경: 비공개정보의 제공관련 벌칙은 없음.

* 정실련(안):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인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악의 또는 고의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진실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면직을 제외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24조).

○ 검찰청

정보제공자가 비보도(off the record)전제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했으나 언론사가 이를 어기고 기사화,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라든가 정보제공자를 처벌할 수 없다.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진 정보를 보도할 것인지 여부는 각 언론이 공익적 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취재원이 보도이후의 문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서울지검 형사1부, 중앙대 재단이사장 고소사건 무혐의처분관련 결정; 국민일보 94.12.23., 19면).

○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총무처시안 중) 어처구니 없는 조항은 벌칙규정이다. 정보관리는 공직자들의 책무이다. 그 책무의 불이행시에는 징계책임을 지우면 된다. 그리고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정보브로커와 결탁해서 이득을 취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법 등의 비밀누설죄 등으로 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보의 공개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라도 일단은 공직자에게 비공개결정을 내리게끔 위하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충분한 효과를 준다. 정보의 '공개법'을 둔 세계 11개국 어디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태만이나 고의로 정보를 비공개했을 경우에 벌하거나(캐나다 정보액세스법), 징계책임(미국 정보공개법)을 지우는 법제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타인 이용에 제공한 자는 면책되도록 하였지만 이는 '공익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자 보호'라는 식의 보다 명료한 문구를 삽입하여 차제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안 제7조에 적용제외대상 정보로 규정된 행정정보들을 비공개결정이 났음에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고 해서 공개되어서는 안될 행정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은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강경근, "정보공개법 제정논의과정과 그 검토",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94.12.19) 자료집, 8쪽).

○ 권영설(중앙대 법대 교수)

정보공개에의 촉진을 위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권영설, 총무처 주최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1994. 12.21) 토론발표; 서울신문 94.12.22., 2면).

○ 성낙인(영남대 법대 교수)

시안의 처벌규정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정보공개법에 이러한 강력한 벌칙규정을 둔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면서 정보공개법에는 벌칙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공개법이 행정의 비밀주의를 타파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임을 비추어 본다면, 종래 비밀주의의 타성에 젖어서 알 권리의 본질에 반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을 공개하였을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자칫 정보공개법제가 비밀보호법제로 전락할 우려도 안게 된다. 이에 공공기관의 직원에 관한 처벌은 기존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처벌규정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게 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굳이 벌칙조항을 둘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악의 또는 고의로 거부하거나 진실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한 공직자여야 한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1994.12.21) 주제발표문, 38쪽).

○ 국민일보 사설

불법적 정보누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두면서 부당한 공개거부에 대해서는 불복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만 둔 것도 문제다. 정보공개청구의 실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 법은 그 의의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국민일보 94.10.13., 3면).

○ 법률신문 사설

벌칙조항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적용제외조항은 공공기관에게 비공개 의무

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비공개허용 규정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특히 처벌규정을 둔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월권이 아닌가 한다.

다른 법률에 그 처벌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오히려 정보공개법의 부당한 기피나 태만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이나 징계가 가해져야 한다. 미국 정보공개법이 그 한 예이다(법률신문 94.12.22., 2면).

○ 세계일보 사설

정보공개 과정에서 사생활과 기업의 기밀에 관한 정보를 산업스파이나 범죄 집단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만 정보공개를 악의나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공직자에게는 벌칙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94.12.22., 3면).

○ 중앙일보 사설

정보의 부당한 공개에 대해 엄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부당한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공무원법이나 각종 비밀보호법 및 규정에 엄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세삼 중복되게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만을 줄 뿐이다. 법체제상, 법원리상으로 볼 때도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벌칙규정을 둔다면 정보공개를 부당히 기피하거나 정보를 은폐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이 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도 없다(중앙일보 94.12.22., 3면).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시안의 처벌규정이 제7조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지라도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특히 제7조에 의한 비공개사유는 다수의 불확정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되는데 법원이 형사소송에서 이러한 판단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문제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유의 판단여하에 따라 자유형까지

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시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를 제공 받거나 또는 사용한 자는 처벌하면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우나 공개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30쪽).

9. 공개를 위한 관련 체제

○ 강경근(송실대 법대 교수)

공개원칙을 이행시킬 수 있게 하는 행정책임체제의 개혁과 문서관리·보관의 적절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국·공립 공문서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총무처 소속의 정부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하든지 읍부즈만 직속기관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안전기획부나 국방부에 대한 청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가의 여부가 공개법 제정으로 신장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주를 확정짓는 데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때문에 정보공개법제의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국가비밀보호법제의 정비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강경근, “민주당 「정보공개법률(안)」발의의 의의와 쟁점”, 민주당 정책위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94.7.19) 자료집, 50쪽).

○ 구병삭(전 고려대 법대 교수)

-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유하는 정보의 취급·처리 예컨대 비밀지정 등이 통일적이어야 바람직하므로 행정정보의 처리방식에 관한 일정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부·공공단체 기타 공적 기관은 각기 활동을 기록할 의무, 문서 기타 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정보의 수집·처리·이용·공개에 관하여 국민·주민이 참가하는 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둘 필요가 있다(구병삭,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공법연구 제17집(1989년), 한국공법학회, 13~14쪽).

- 정보공개문제의 출발점의 하나인 문서열람창구의 개설과 그 확대가 필요하

고 거기에 목록과 공통적 공개기준의 책정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청구 이용촉진을 계몽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 각부처의 문서관리에 있어서 그 현상과 과제 및 문서분류의 표준화, 정보소재안내 등 「公文書館」의 기능의 정비에도 기술적인 검토가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공문서 이외 그에 관한 기록과 전산처리된 것까지도 공개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도 정보공개법의 일환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구병삭,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공법연구 제17집 (1989년), 한국공법학회, 41~42쪽>.

○ 홍준형(아주대 법대 교수)

시안 제28조제1항이 공개대상정보의 작성·취득후 60일 이내에 공개목록의 작성·비치, 열람제공을 하도록 한 것은 정보공개준비기간으로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전산자료의 경우 그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실련 주최 『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공청회(1994.12.19) 자료집, 29~30쪽>.

10.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 안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행정기관에 의한 비밀분류가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는가, 즉 법원에서 정보의 비밀성 여부가 문제된 경우 행정기관의 이러한 비밀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안법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형식주의)과 헌법재판소 판결(병합주의) 상호간의 모순이 정보공개법(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지 의문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미국 FOIA법에 대한 비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이 “정보를 은폐하는 합법적 도구”로 이용될 수는 있었던 점을 참작할 때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안)의 안전장치는 무엇인가(안영도, “정보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제문제”, 민주당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19) 토론요지문, 74쪽).

(1) 형식주의적 입장

○ 김문현(이화여대 법대 교수)

행정기관이 절차상 적법한 방법으로 문서를 사실상 비밀지정하였으면 그러한 비밀지정의 실질적 정당성에 대하여까지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김문현, “알 권리와 그 한계”, 『인권과 정의』1992.9월호, 18쪽).

○ 대법원 판례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는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7.6.23. 선고, 87도705판결).

(2) 實質秘說

비밀을 “비공지의 사실이고 실질적으로도 그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사를 허용하는 입장임(일본 최고재판소 1977.12.19판결: 안영도, “정보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제문제”, 민주당 주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1994.7.19) 토론요지문, 73쪽).

(3) 併合說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표시 또는 고지된 군사관련 사항이어야 할 뿐 아니라(절차적 요건), 아울러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자체가 실질적인 비밀가치

를 지닌 비공지의 사실(실질적 요건)이라야 한다(헌재 1992.2.25 결정, 89헌가 104,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에 대한 위헌심판).

※ 비공개에 관한 현행법령 규정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2조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
-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00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형사소송법 제47조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관련 판례

- 헌재1992.2.25 결정, 89헌가104,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헌재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재 1991.5.13. 선고, 90헌마 133 결정).
-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누9312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2추17 판결
- 서울고법(1988.7.6 선고, 88구1334판결): '기밀을 제외한 국가보관문서를 국민이 신청하면 복사해 줄 의무가 있다.'

Ⅲ. 입법방향

1. 각계의견의 검토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은 총무처의 정보공개법(안)을 비롯한 5개의 시안, 각 시안에 관한 검토의견, 학계와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한 입법의견 등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주된 쟁점사항으로는 비공개정보의 범위,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및 권한, 그리고 벌칙에 관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을 쟁점별로 분석·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5개 시안의 비교는 참고자료의 '사항별 시안의 비교분석표'로 갈음한다.

1) 「정보의 공개」분야의 주된 쟁점은 ①정보공개 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외국인을 어떠한 요건하에서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②정보공개 의무기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로서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범위'에 어떠한 기관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 ③공개대상정보에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정보' 내지 내부자료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④비공개정보의 범위(적용제외사항)에 관하여 비공개사항의 범위, 그 규정방식과 범위의 특정화문제 및 일반조항에 의한 적용제외문제, ⑤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결정에 관하여 공개청구시의 정보 특정정도와 공개여부의 결정기간과 연장문제 등을 들 수 있다.

(i) 정보공개청구권자: 주민, 국민, 이해관계자로 한정하거나 '모든 자'로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과 법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 또는 「모든 자(anyone)」로 하는 입법례에 해당되고, 외국인은 포함하되 법인은 제외하는 입법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명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입법례도 있다.

입법의견상으로는 일정한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그 거주기간 내지 규정형식에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외국 법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각 시안에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프랑스와 같이 문

서의 기명성여부에 따라 관계자에만 한정하는 구별도 언급이 없다.

(ii)정보공개 의무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기관을 포함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공공단체의 기관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로 하느냐에 대하여는 광협의 차이가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외에 정부 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견해, 정보공개법에 규정하는 견해, 양자의 절충적 견해로 나뉘고 있다.

(iii)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이에 대하여 각 시안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문서화된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자는 견해, 공刊하지 않은 내부자료의 공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 공공기관이 손쉽게 중앙전산망에 접근하여 근소한 비용으로 검색·취득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iv)비공개정보의 범위: 이는 정보공개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적용제외사항을 규정하는 방식(한정적 열거주의, 개괄주의 등), 규정의 명확성 문제(불확정범률개념의 사용문제), 객관성의 문제, 시한성과 부분성의 문제, 적용제외사항과 비밀준수의무와의 관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규정방식은 열거주의에 입각하되 최대한 범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어 한정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법령에 의한 비공개도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일반적이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비공개사유로 하는 것은 막연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총무처 시안 외에는 규정이 없음)이 많고, 법인 등에 관한 정보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와, 영업 및 재정에 관한 정보 외에 기타 법인 등의 기밀에 속하는 사유도 포함할 것인가도 견해가 나뉘고 있다.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공개에 대하여 임의적 공개로 하는 의견과 의무적 공개로 하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v)정보공개와 청구 방법과 결정: 청구의 방법에 관하여 각 시안은 서면신청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전화·우편·팩시밀리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공개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문제로 되는 부분

은 결정기간 및 결정기간의 연장이다. 이는 정보의 신선도에 따른 가치유지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결정기간은 대체로 15일이내로 좁혀지고 있지만, 결정기간의 연장부분은 그 각 의견상의 편차가 2주일에서 60일까지로 심하다. 비공개결정의 간주 시점도 결정기간이 지난 때에서 청구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다양하다.

공개결정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를 실제로 받는 기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시안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여부의 결정 내용에 관하여 각 시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외에 자료없음(보유하지 않은 경우)과 이첩(다른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경우)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성실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의 소재와 청구대상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수인에 의한 동일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 「정보공개거부의 구제」분야의 주된 쟁점은, ①불복구제절차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이행소송을 인정하는 새로운 불복절차를 둘 것인가, ②불복심사청구의 효력에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가, ③정보공개방지를 위한 '정보보전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④공무원이 악의 내지 고의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둘 것인가, ⑤불복심사기관을 어떠한 형태와 지위 및 권한으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i) 불복구제절차의 형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를 활용하는 의견과 정보공개이의의 소 등 형태로 이행소송을 인정하는 새로운 불복절차를 두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는 현행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제도가 가구제제도와 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데 근거한다.

불복심사기관은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며, 그 법적 지위와 권한, 재결의 효력으로서 처분성 인정문제가 다양한 의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크게 정보공개위원회형태와 정보민원감찰관(옴부즈만제도)형태로 나뉘고 있고, 정보공개위원회의 경우 국가차원의 단일 정보공개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각 헌법기관별로 두는 방안 또는 이단계의 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불복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점, 권고적 효력과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

게 그 조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는 각 시안이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권고적 효력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시정조치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법원의 소송부담을 감소시킬 여지가 없게 되며, 따라서 심사청구절차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보전소송 내지 역정보소송 등과 같은 정보공개방지를 위한 불복절차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결정과정 이후의 절차에서도 공개여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방어권 보장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한편, 비공개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벌칙규정은 총무처안에서만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벌칙중에 정보공개악의적 거부 내지 방해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두자는 의견이 있으나, 각 시안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

3) 「정보공개제도의 관리」분야에는 ①정보공개기관의 의무, ②정보공개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정보공개위원회'나 '정보민원감찰관'제도를 어떠한 구성과 지위와 권한으로 할 것인가, ③정보의 공개·비공개구체적인 기준설정 등에 대한 사전적 조정의 문제, ④정보공개실태조사와 제도의 개선, ⑤기타 정보공개에 대한 위법행위의 처벌문제 등을 들 수가 있다.

(i)정보공개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청구원의 존중 해석 및 운용원칙,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각 시안의 공통적인 사항이나, 정보공개목록의 작성·비치의무에 관하여 작성기간을 1월 또는 2월로 나눌 것인지, 관보에 게재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ii)정보공개실시의 관리·감독기관: 정보공개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옴부즈만제도로서 정보민원감찰관제도를 두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 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파악,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시안은 없고, 일부 입법예견과 총무처장관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총무처안) 등이 있다.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구체적인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iii)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이는 가장 의견이 분분한 쟁점이다. 단일위원회를 둘 것인가, 헌법기관별로 둘 것인가, 이원적으로 정보공개심판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를 둘 것인가로 나뉘며, 음부즈만제도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 구성원의 수는 5인에서 많게는 15인의 안도 있다. 또 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민간인과 공무원(경력자 포함)으로 하는 방안, 형식적 자격 대신 실질적인 지식·경험·인격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법조계나 학계 및 공무원으로 하는 안, 법률관계 전문가로 하는 안 등으로 나뉘고 있다. 임기도 3년, 4년, 6년, 대통령령에 위임 등으로 나뉘고 있고, 의결정족수도 재적과반수 내지 재적 2/3의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 하는 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으로 갈리고 있다.

(iv) 정보공개와 관련제도 문제: 문서관리·보관의 적절성 확보 및 문서열람창구의 개설과 그 확대로서 국·공립 「공문서관」(가칭)의 설치, 국가기밀보호법제의 정비, 정보공개목록과 공통적 공개기준의 책정, 각부처의 문서관리에 있어서 그 현상과 과제 및 문서분류의 표준화, 비공개문서여부의 결정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4) 이상의 각계의견과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첫째 정보공개법은 정보제공이나 정보홍보 또는 정보공표와 같이 정보공개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특정 행정정보를 해당 관련자나 일반 국민에게 개시하는 재량공개에 관한 법이 아니라, 공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의무화하고 정보 비공개에 입증책임이 청구권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지는 의무공개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의 범위와 그 구체성 및 명확성의 정도에 관하여 발생하는 의견상의 차이는 기존의 재량공개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의 비공개성 내지 비밀주의에 대한 인식 내지 신뢰도에 상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약한 계층의 의견일수록 구체성과 엄격성과 재량의 기속성 및 대통령령에의 위임 제한이라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공개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하려고 하며, 독립된 기관에서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비공개정보 내지 비밀과 공개정보는 모순관계에

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정도는 비공개결정과 비밀지정의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점, 이러한 결정과 지정은 사실상 관계공무원의 재량과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를 가능한 한 충분히 규정하려는 취지를 각계의견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밀지정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의하지 않고 관련개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머물고 있다.

셋째, 정보공개에 관한 관리는 실질적인 정보 공개의 성패가 정보관리체계와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실태 파악과 그 문제점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홀히 다루고 있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다. 정보가 있어야 공개가 있다. 정보는 문서와 기록인데 이의 관리체계의 확립과 공개시스템의 확보에 관한 의견이 시안에는 나타나지 않고 일부 의견에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2. 입법방향

1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정부도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정하여 1994년 7월1일부터 각급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에 관하여는 오직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의 시기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후 활발히 논의된 정보공개법 제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을 종합하여 분석·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정보공개에 관한 원칙과 정보공개법의 기본성격에 관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의무공개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여 '국가와 국민간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다. 따라서 반드시 헌법상의 추상적인 권리인 알 권리를 청구권적·실정적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는 공개되어야 할 정보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데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규정되는 공개대상인 정보는 공개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의 재량공개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골격과 원칙과 시스템적 구조를 규정하는 형태로 제정되어야 하며, 탄력적 운용과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과 개별법령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에 관한 실천적 제도와 기반의 확립에 따르는 변화와 개선여지를 감안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전제되는 정보관리체계 자체가 아직 일천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포함하는 정보공개법은 시행착오를 양산하며, 정보공개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역기능도 낳을 우려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의 골격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단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공개의 관리·감독기관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이 의무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의무기관이 정보공개를 최대한으로 활성화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공개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특정 행정정보를 일반국민이나 해당 관련자에게 개시하는 재량공개의 소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의무공개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알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걸친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발전과 개선을 기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구체를 비롯하여 정보공개의 시스템적 운용과 기반여건의 확대 및 그 공개된 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으로 정보공개위원회나 읍부즈만형태의 정보민원감찰관제도가 있으나, 총무처안처럼 각 헌법기관별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보공개는 주된 대상이 행정정보이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등의 정보공개도 제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삼권분립상 하나의 정보공개위원회가 모든 국가의 정보공개를 담당하기에는 법령체계상 시행령 이하의 규정을 통한 운영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운영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찾을 수 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그 구성의 문제는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직결되므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정보공개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 이 두 가지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위원의 신분보장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정보의 의무공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 구성원의 수와 자격은 그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 경력자의 구성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도 일반인 중에서 위원간의 호선으로 당해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공개가 의무공개를 대상으로 하고 헌법기관별로 정보공개위원회가 기관장의 위촉 내지 임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당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정보공개에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때 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각 시안에서 권고적 효력외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에 관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시정조치의 권고와 조치결과상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인 개선강제를 규정하고는 있다. 국회에 대한 정기보고서의 제출도 입법부를 통한 정보공개에의 개선을 기대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사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프랑스의 예처럼 오히려 비공개문서의 목록 작성기준과 적용제외항목(비공개사항)에 대한 부처의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관한 사전 조정과 검토권능이 인정되어야 사전적인 정보공개에의 제도적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비공개에 경우에는 후술하는 구체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보공개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현실적으로 행할 경우 이를 국가적 기준에 따라서 공개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관리와 설비가 선행되어야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목록의 작성과 분류기준, 문서나 기록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소의 완비가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문서의 보조기능에 치우친 정부기록보존소의 정보가공 및 열람기능 확대와 정보공개에의 적합성 부여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know-how가 아니라 know-where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필요한 정보의 소재와 그 형태 및 정보화상태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정보 자체의 관리가 체계화되고 문서와 기록이 정보의 형태로 가공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보의무기관 단위 및 헌법기관 단위의 정보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는 물리적 형태의 정보를 보관·열람할 제도가 요구된다. '국·공립공문서관'(가칭)의 설치의견은 이러한 점에서 채택을 고려할 만하다. 문서열람창구의 기능, 정보공개목록과 공통적인 공개기준의 마련, 각부처의 문서관리에 있어서 그 현상과 과제 및 문서분류의 표준화, 정보소재안내 등의 기능을 기술적으로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공공단체 기타 공적 기관은 각기 활동을 기록할 의무, 문서 기타 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이들 기관에서 생산, 수집, 보관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다수 의견들은 기존의 정보만을 염두에 두고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일면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정보의 생산자인 공공기관 등이 생산단계에서부터 그 정보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책임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정보의 부재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일반적 관행이 사실기록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각종 중요한 정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적지 않음은 감안한다면,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못지 않게 원천자료의 충실한 생산 즉 기록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관하여도 감독적 기능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위원회가 단순한 비공개에 대한 불복심사기관외에 최소한 정보공개 의 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심의·권고기능을 가지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하려면 상설위원회로 하든지, 아니면 이를 보조하는 보좌관제도나 사무국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비공개의 구제는 그 담당기관과 절차 및 그 법적 효력이 중요사항이다.

정보공개의 거부에 대한 구제제도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거하는 구제제도, 제3자적 심사기관에 의한 구제제도, ombudsman 유사제도에 의한 구제제도 및 합의제 구제기관에 의한 구제제도로 유형화할 수 있다. 입법례상으로 보

면, 이의신청과 사법구제 두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해 기관 내지 상급기관에 대한 이의신청만 사법구제와 함께 인정하는 경우와 이외에 음부즈만제도 내지 정보공개위원회에 의한 고정신청(불복심사청구)을 병행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사법구제의 경우는 각각 국가에 따라 행정재판소나 사법법원(재판소) 또는 연방재판소에 제소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각 국가의 행정소송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법현실적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제절차가 신속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심사 내지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단기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필요한 전심절차가 가능한 한 생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신속한 결정과 고도의 이익형량 요구, 심판기관의 독립성보장 강화라는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불복절차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구제제도의 불비와 행정상 이행소송의 부인'이라는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불비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행정소송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차원에서 정보공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쟁송법의 보충적 적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심판과 정보공개소송 두 단계에 있어서 역정보소송(Reverse FOIA Suit) 내지 '정보보전소송'과 같은 정보공개의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개인 정보보호법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안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인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공개청구의 구체적 신청방법에 신청서외에 전화, 우편, 팩시밀리 등에 의한 신청도 인정되도록 시행령 등에서 반영되어야 정보공개서비스가 보다 폭넓고 편리하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요구되고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보장되려면, 정보의 조직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기반정비와 보존기한에 의거한 적정한 관리제도의 확립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된 기준에 의하여 기록되고 분류되어 보존·공개되고 폐기되도록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물적·인적 장치가 미흡

한 우리의 현실에서 정보공개법의 제정은 특히 이러한 기반적 선결조건의 충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당해 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에의 거부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절차의 제도화,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보공개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보민주화, 책임행정,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에 관한 통일적 기준과 이를 위한 제도의 마련에 우선적 의미를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을 부언할 필요도 없다. 정보공개는 know-how에 관한 것이 아니라 know-where에 관한 정보사회의 당연한 요청이며, 최대한의 공개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공개를 규정한 법인 것이다.

〈참고 자료〉

※ 정보공개법(안)의 사항별 비교표

* 약칭: 총무처시안 = 총, 경실련안 = 경, 민주당안 = 민, 한국공법학회안 = 공,
한국행정연구원안 = 행,

* 〈〈○ = 동일, △ = 유사, ☆ = 다름, - = 해당조항 없음, ※ = 차이가 있는 규정내용〉〉 : 항목기준은 총무처안〉

1. 공개대상 정보(안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

〈민: △(제6조) / 공: ○(제4조) / 행: △(제2조제2호) / 경: △(제6조)〉

* 행: ...마치크로 피슈, 음반, ...데이터베이스 기타 일체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

2. 정보공개 의무기관(안 제1조, 제2조제3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기관(공공기관)(제1조)

②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제2조제3호)

〈민: △(제5조) / 공: 행정기관(제1·3조) / 행: △(제2조제1호) / 경: (제5조)〉

* 민: 기타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출연에 의해 설립된 각종 연구기관, 기타 공공단체중 행정권이 부여되고 공중의 관심이 되는 정보를 통제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경: 기타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출연에 의해 설립된 각종 연구기관, 기타 공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3. 정보공개 원칙(안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 △(제2조) / 공: - / 행: ○(제3조) / 경: △(제2조) >

- * 민: 정보의 공개가 신속하고 최저의 비용으로 용이하게 촉진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 * 행: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경: 정보는 公共材로서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의 비공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4. 공공기관의 의무(안 제5조)

①정보공개청구권의 존중 해석 및 운용원칙, 소관관련 법령 정비의무.

②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민: - / 공: ○(제7조제3항) / 행: ○(제7조제1항) / 경: △(제11조3항)>

- * 경: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주선하고 이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 청구권자(안 제6조)

모든 국민, 외국인(대통령령에 위임)

<민: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제4조) / 공: 국민, - (제2조) / 행: ○(제5조) / 경: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제4조)>

6. 적용제외대상 정보(안 제7조)

1) 법령상 비공개정보

- 총: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7조제1항제1호)
- 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적으로 그 공개를 면제받은 사항(제7조제1항)
○ 법률 또는 법률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특정적으로 공개를 면제받은 사항. 이 경우 법률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사항에 대한 비공개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며, 또는 비공개조치의 상세한 기준을 정하거나 비공개되어야 할 사항의 상세한 종류를 합리적으로 열거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제2호)
- 공: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면제된 정보(제5조제1항제6호)
- 행: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사안을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정보(제8조제10호)
- 경: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명령이 사항을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제7조제1항제2호)

2) 국 의

- 총: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조제1항제2호)
- 민: 공개함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관계를 명백히 해한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항. 다만, 비공개로 하는 뜻을 지정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정보는 제외한다(제7조제1항제1호).
- 공: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관계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는 정보(제5조제1항제1호)
- 행: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관계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8조제1호)
- 경: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국가의 안전 등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 단 비공개로 하는 뜻을 지정한 날로부터 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정보는 제외한다(제7조제1항제1호)

3) 공공의 안전과 이익

- 총: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7조제1항제3호)
- 민: (해당규정 없음)
- 공: (해당규정 없음)
- 행: 공개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제8조제9호)
- 경: (해당규정 없음)

4) 형사사법적 정의

- 총: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제7조제1항제4호)
- 민: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명백히 곤란케 하거나 또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항(제7조제1항제3호)
- 공: (총무처안과 동일: '상당한 이유' → '충분한 사유')(제5조제1항제2호)
- 행: (총무처안과 동일)(제8조제4호)
- 경: (총무처안과 동일)(제7조제1항제3호)

5) 인사행정

- 총: 공공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관의 인사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

7조제1항제5호)

- 민: (총무처안과 동일 : '오로지' '충분한 이유')(제7조제1항제4호)
- 공: (총무처안과 동일: '상당한 이유' → '충분한 사유')(제5조제1항제3호)
- 행: (총무처안과 동일)
- 경: (총무처안과 동일)

6) 공정한 행정

- 총: 감사, 감독, 검사, 규제, 입찰계약,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조제1항제6호)
- 민: (해당규정 없음)
- 공: (해당규정 없음)
- 행: 공공기관의 규제·감독·검사·시험·입찰계약·계획의 수립 및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공정 또는 원활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조제8호)
- 경: (해당규정 없음)

7) 의사결정과정

- 총: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중에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제7조제1항제7호)
- 민: 당해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오로지 당해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의견교환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사항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의사결정을 명백히 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항(제7조제1항제5호)
- 공: (해당규정 없음)
- 행: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당해 기관 내부의 또는 다른 기관과의 의사교환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공정하고 적정한 의사결정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8조제6호)

○ 공공기관 상호간의 지시, 협의, 신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관계 또는 협력관계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조제7호).

- 경: (민주당안과 동일)(제7조제1항제5호)

8) 개인정보

- 총: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조제1항제8호)

- 민: 개인의 사상, 종교, 취업, 거래, 경력, 출신지, 재산, 범죄, 신체적 특징, 건강상태, 기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다만, 당해 개인이 공개함을 동의한 사항은 제외한다(제7조제1항제6호).

- 공: 개인의 출신지, 사상, 종교, 병력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제5조제4호)

- 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 공표되거나 또는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법령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인가·면허·신고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당해 개인이 공개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

라. 공무원 또는 공직의 후보자 혹은 공무원 또는 공직의 후보자이었던 자의 직무 또는 지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조제2호)

- 경: 개인의 사상·종교·직업·거래·경력·재산·전과·신체적특징·건강상태, 그외 다른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공개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 다만, 당해 개인이 공개를 동의한 사항은 제외한다(제7조제1항제6호)

9) 법인정보

- 총: 법인 및 그외의 단체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지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제7조제1항제9호)

- 민: 기업, 그외의 법인 및 단체의 영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함에 의하여 그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항 (제7조제1항제7호).

- 공: 거래상의 비밀 또는 개인의 영업 및 재정에 관한 정보(제5조제5호)

- 행: 법인 및 그 외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영업상,거래상,금융상 정보 및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법인 등 또는 개인의 경쟁상 또는 사업운영상의 지위가 현저히 손상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관련된 정보

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로부터

소비활동이나 기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 가. 내지 다.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조제3호)

- 경: 기업의 영업상·재정상 비밀 기타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공개에 의해 그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제7조제1항제7호)

10)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공개

- 총: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비공개성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7조제2항)
- 민: (...국가의 안전...외교관계...). 다만, 비공개로 하는 뜻을 지정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정보는 제외한다(제7조제1항제1호)
- 공: (해당규정 없음)
- 행: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그러한 위험이나 우려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사항의 해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제11호).
- 경: (국가의 안전 등..). 단 비공개로 하는 뜻을 지정한 날로부터 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정보는 제외한다(제7조제1항제1호)

7.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안 제8조)

①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민: ○서면신청(안 제11조제2항) / 공: 시행령에 위임(제6조제1·4항) / 행: ○(제10조제1항)/ 경: ○(제8조)>

②청구정보의 특정:

총: (해당규정 없음)

민: 보유기관이 상당한 노력을 하면 확인가능한 정도(제11조제2항)

행: 해당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제10조제1항)

경: 공개청구된 정보의 특정 및 사용목적(공개청구서에 기재)(제8조제2호)

8. 공개여부의 결정(안 제9조)

①공개여부 결정기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 서면통지의무
<민: 10일 이내(제12조제1항) / 공: 2주 이내(제6조제2항) / 행: 7일 이내
* 14일 이내(제11조제1항) / 경: 2주 안에(제9조제1항)>
* 행: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결정을 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②결정기간의 연장: 30일 한도, 연장이유의 서면통지
<민: ○(제13조제1항) / 공: 2주일 범위(제6조제2항) / 행: 1회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제11조제2항) / 경: 1회 2주 이내(제9조제1항)>

* 연장사유:

(총) 부득이한 사유

(민) 다수의 정보요구, 다수의 정보중 검색필요, 명백히 법정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 혹은 협의가 필요할 때

(공) 정당한 이유

(행) 상당한 이유

(경) 상당한 이유

③비공개결정: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의 서면통지
<민: ○(제12조제2항) / 공: ○(제10조제1항) / 행: ○(제11조제2·3항) / 경: ○(제9조제3항)>

④제3자 관련정보: 제3자에게 통지,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가능
<민: ○(제12조제3항) / 공: - / 행: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 / 경: ○(제9조제4항)>

* 행: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고 제1항의 결정을 한다(제11조제6항)

⑤비공개결정 간주: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결정통지가 없는 때
<민: 1월 이내(제13조제2항) / 공: 2개월 이내(제10조제1항) / 행: 결정기간이 지나도 통지없는 때(제11조제8항) / 경: 행정연구원안과 동일(제9조제2항)>

9. 정보공개의 실시(안 제10조)

①사본의 공개(안 제10조)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민: ○(제14조제2항) / 공: - / 행: ○(제12조제2항) / 경: ○(제10조제2항)>

②부분공개(안 제11조)

<민: ○(제7조제2항) / 공: - / 행: ○(제9조) / 경: ○(제7조제2항)>

③비용감면(안 제13조제2항)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 ○주로 일반공중의 이익(제16조제2항) / 공: - / 행: △(제13조제3항) / 경: ○(제12조제3항)>

* 민: 면제 또는 할인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 행: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거나 공공복리의 향상 등을 위한 ...감면할 수 있다(제13조제3항)

④수수료의 액수(안 제13조)

-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액수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3항)

<민: 대통령령, 표준요금에 의한 실비(제16조제1항) / 공: 대통령령(제6조제3·4항) / 행: 검색·복사·심사를 위한 직접경비(제13조제2항) / 경: 대통령령,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적정수준(제12조제2항)>

10. 정보공개위원회(안 제4장 제14조 내지 제19조)

①설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에 각각 설치(제14조)

②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5인이상 7인이하 / 민간인이나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경력자 / 임기 3년 1차 연임 단, 직위 지정 임명 내지 위촉 위원은 그 직위동안(제15조)

③조직과 운영등: 각 기관의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8조)

④기타: 직무의 독립성(제16조), 의결정족수(제17조), 위원·직원의 비밀엄수(제19조)

<민: ☆ / 공: ☆정보자유위원회(제8·9조) / 행: ○(제15조) / 경: △정보공개심판위원회(제14·15조)>

* 민: 정보민원감찰관제도 설치(제6장 제18조 내지 제26조, 제33조 내지 제42조)

* 공: 감사원에 설치(제8조),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재결, 행정기관의 감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기관(제9조), 불복심사청구의 재결(제10조제2항)

* 경: 국회에서 선출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일)정보공개심판위원회 임

<< 불복구제절차>>

11. 이의신청(안 제20조)

①신청사유: 공개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거부시, 기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신청

<민·공·행: - / 경: 결정서 도달된 날로부터 1월안에 서면신청(제13조제1항)>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지체없이 결과를 서면 통지

<민: - / 공: - / 행: - / 경: 10일안 결정 통보(제13조제2항)>

12. 심사청구(안 제21조)

①공개여부의 결정통보를 받거나 비공개결정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 심사청구(제21조제1항)

<민: △(제18조) / 공: 기간규정 없음 / 행: △(제14조제2항) / 경: ○(제16조제1항)>

* 민: 보유기관의 거부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구두 또는 문서로, 정보민원감찰관에게 불복심사청구(제18조)

* 공: 정보자유위원회에서 불복심사청구 재결(제10조)

* 행: 심판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준용

②이의신청(안 제20조)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제21조제2항)

<민: ○(제18조제1항) / 공: ○(제10조제2항) / 행: ○(제14조제1항) / 경: ○(제16조제1항)>

* 민·공·행: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규정 없음.

* 경: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제기함(제16조제1항).

13. 심사 및 결정(안 제22조)

①결정기간: 접수로부터 60일 이내, 1차 30일 연장

<민: 3월이내, 연장 없음(제24조제1항) / 공: 1월이내(제10조제2항) / 행: 100일이내(제16조제4항) / 경: 2월안에(제16조제2항)>

②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을 증인·참고인으로 소환 가능

<민: △ / 공: - / 행: ○(제16조제5항) / 경: ○(제16조제3항)>

* 민: 보유기관의 장에게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사청구에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의무(제21조), 관계인 소환, 자료제출명령권 인정(제23조)

③제3자관련정보: 제3자에게 통지

<민: ○(제20조제1항) / 공: - / 행: ○(제16조제6항) / 경: ○(제16조제4항)>

④제3자: 정보비공개 청구 가능(본인의 권익,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시)
<민: △(제20조제3항) / 공: - / 행: ○(제16조제7항) / 경: △(제16조제5항)>

* 민·경: 공개청구된 제3자관련 정보가 '오로지 청구자의 사익을 위한 것'일 때
불복심사청구기각(제20조제3항)

⑤기각의결시 통지: 행정소송 제기가능 취지 서면 통지
<민: △(제24조제4항) / 공 - / 행: ○(제16조제11항) / 경: - >

14. 공개 등 시정조치의 권고(안 제23조)

①청구인용결정효력: 공개 등 시정조치의 권고적 효력
<민: ○(제24조제2항제2호·제25조제1항) / 공: 조치, 보고의무(제10조제2항) / 행: 조치, 통보의무(제16조제4항) / 경: - >

②관계 공공기관의 장 의무: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에 그
결과 통보의무
<민: ○청구자, 제3자포함(제25조제2항) / 공: 재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제10조제2항) / 행: 재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제16조제4항) / 경: - >

15. 공표(안 제24조)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민: - / 공: - / 행: - / 경: >

16. 행정심판법의 준용(안 제25조)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민: ○(제26조) / 공: - / 행: ○(제18조) / 경: ○(제16조제7항)>

17. 행정소송(안 제26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 ☆ / 공: 민주당안과 유사(제10조) / 행: ○(제19조제1항) / 경: ○(제17조제1항)>

- * 민: 법원에의 정보공개거부의 이의소(정보공개소송) 제기(제27조~제32조)
- * 공: 법원은 제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제10조제3항)
- * 행·공: ...법원은...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4조를 준용한다(행: 제19조제8항 / 공: 제17조제6항).

18. 보칙(공공기관의 의무)

①자료제공의무: 이 법에 의한 정보외에도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27조).

②정보공개목록작성·비치 등: 공개대상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정보공개목록을 작성·비치, 열람에 제공한다(안 제28조)

<민: 1월이내(제8조2항) / 공: 1월이내, 관보게재 요(제7조) 행: 2월이내(제7조제2항) / 경: 정보 입수날로부터 1개월내, 관보에 공고의무(제11조)>

- * 민: 정보공개목록부에는 정보의 종류, 목적, 내용, 작성자의 성명이나 명칭, 작성 또는 취득연월일, 보관의 기간 및 담당부서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
- * 공: 상 동(담당부서, 내용특정 사항은 없음: 제7조), 행정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정보자유위원회에 정보목록을 제출해야 함(제9조제3항·부칙 제2항))

③국회에의 보고·자료제출 등 요구: 위원회는 연 1회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파악, 보고서를 작성 정기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안 제29조) / 총무처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

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 가능.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가능
(안 제30조).

<민: △제43조, - / 공: △(제8조제3항), - / 행: △(제25조) / 경: △(제24조)>

- * 민: 연차보고서: 매회개년도의 종료후 3월이내,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제출. 특별보고서는 수시
- * 공: 매년 보고서를 대통령 및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함(제9조제4항)
- * 행: 총무처장관은 매년 연차별 정보공개 보고서를 발간,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함(제25조제1항). 총무처장관은 행정부의 각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제25조제2항)
- * 경: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4조제2항).

<<벌칙>>

19. 벌칙(안 제7장 제32조 내지 제34조)

①비공개정보의 타인 제공행위:

비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제공받은 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적용제외대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③양벌규정:

법인, 개인(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게 벌금 과함.

④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 아닌 자 또는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비공개정보의 공개관련 벌칙(안 제32조)

<민: - / 공: - / 행: - / 경: - >

- * 민: 비공개정보의 제공관련 벌칙은 없음. 정보민원감찰관제도와 관련된 직무 수행방해죄, 불출석죄, 위증등의 죄 규정이 있음(안 제46조 내지 제49조).
- * 행: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안 제28조). 비공개정보의 제공관련 벌칙은 없음.
- * 경: 비공개정보의 제공관련 벌칙은 없음.

20. 경과조치

①시행일: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칙 제1조)

<민: 공포후 6월 / 공:공포후 6월 / 행:공포후 1년 / 경: 공포후 1년안에>

②경과조치: 공공기관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8조 제1항의 정보목록 작성의무(부칙 제2조)

<민: - / 공:시행일로부터 1월이내(부칙 ②) / 행: △(부칙 제1조) / 경: - >

- * 공: 정보목록을 정보자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②).
- * 경: 다른 관계법률의 개정 및 정보공개심판위원회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후 1년안에 시행한다(부칙)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1. 최근입법의견목록

(1994.10.11. ~ 1994.12.10)

◎ 憲政	79
○ 감사원법 개정의견	
○ 통합선거법관련 입법의견	
◎ 統一·外交·國防	80
○ 남북교류대비관련 입법의견	
◎ 內務·地方行政	80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공무원인사제도개혁 입법의견	
○ 공원경찰의배치와직무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공적연금제도관련 입법의견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부정부패방지관련 입법의견	
○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시행령 개정의견	
○ 지방세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관련 입법의견	
◎ 社會·文化·教育	85
○ 개인과외교습과세관련 입법의견	
○ 경륜·경청법 개정의견	
○ 교육관련 입법의견	

- 국민연금법 개정의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노동위원회법 개정의견
- 대학원교육관련 입법의견
- 대학재정관련 입법의견
- 대학정원자율화관련 입법의견
- 대학학사제도관련 입법의견
- 대학행정관련 입법의견
- 방과후아동지도 프로그램관련 입법의견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영유아보육법 개정의견
- 영화등영상물관련 입법의견
- 외국인교수의 법적지위관련 입법의견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청소년유해인쇄·영상물 규제관련 입법의견
- 학교급식법 개정의견
- 효도법(가칭) 제정의견

◎ 産業·經濟 94

- UR이행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개정의견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대금업법(가칭) 제정의견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법인세법 개정의견
- 산업보호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세정개혁관련 입법의견

- 소비자협동조합법(가칭) 제정의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어린이안전강화관련 입법의견
- 외환제도관련 입법의견
- 전문할인판매점관련 입법의견
- 전자게임산업관련 입법의견
-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지적재산권관련 입법의견
- 토지세제관련 입법의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의견

- ◎ 農林·水産 103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농·수·축협동조합관련법 개정의견

- ◎ 建設 104
 -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국유지관리관련 입법의견
 - 도시재개발법 개정의견
 - 부실공사방지관련 입법의견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안전사고방지관련 입법의견
 -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의견

- ◎ 科學技術·交通·遞信 109
 - 과적단속관련 입법의견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수도권교통기획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견
-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초고속정보통신망관련 입법의견

◎ 環境 · 保健 111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공해배출시설관련 입법의견〉
 - 〈공해물질총량규제관련 입법의견〉
- 물관리관련 입법의견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견
-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원등에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환경오염공익관련시설에 대한 입법의견

◎ 法院 · 法務 115

- 검찰청법 개정의견
- 공소시효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국적법 개정의견
-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동성동본불혼 민법 개정의견
- 무고 · 음해문화관련 입법의견
- 법원 및 법무사비리관련 입법의견
- 인신보호관련 입법의견
- 재난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증인및피해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형법 개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2. 최근입법의견요지

(1994.10.11. ~ 1994.12.10)

◎ 憲政

○ 감사원법 개정의견

- 대통령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국회 보고제도 등 감사원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으로서 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감사원이 독립성 확보와 권한 강화를 스스로 포기한 것임. 공무원의 비위나 범죄가 대부분 수뢰죄로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이들에 대한 감사원의 제좌추적권이 없을 경우 직무감찰을 통한 비위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함(조순형, 조홍규, 장석화 의원).
- 중복감사를 고쳐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기관감사 등을 통괄할 수 있도록 협의제 제도를 채택하기로 함(이시윤 감사원장).
- 회계검사 및 감사대상인 금융기관(국책은행)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특정 점포에 문서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감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재무부 『금융자산 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 한겨레 94.10.18., 4면; 서울 94.11.9.,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84면) · 제94-5호(87면) 참조

○ 통합선거법관련 입법의견

- ①기부행위제한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지 말고 모든 기간동안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②사전선거운동의 한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특히 사조직 규제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③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일정수를 정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고 제공식당을 미리 선관위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고, ④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선거사무소의 연락소 유지비용도 선거비용에 산입하는 등 선거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입

좌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서울 94.10.25.,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72면) · 제94-2호(79~80면) 참조

◎ 統一 · 外交 · 國防

○ 남북교류대비관련 입법의견

- ①앞으로 교류협력이 다양해지면 법 하나로 모든 분야를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기본법과 인적왕래 · 교역 · 협력사업 분야의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의 '남북간 교역에 관하여 국가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이나 남북기본 합의서 정신 등에 상충되며, ③북한을 '적'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의 용어를 정비하고, 「물수급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등 3개 법은 '북한 괴뢰집단', '북한 공산집단'이라는 표현을 바꾸며, 「부채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재외국민취적 · 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등 11건에서 '수복', '미수복'의 용어도 정비함(통일원).
- 남북간 상호왕래 및 교역에 대해 통일원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함(민주당).

: 서울 94.10.21., 4면

◎ 內務 · 地方行政

○ 공무원범죄에관한물수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공무원범죄중 뇌물죄뿐만 아니라 국고횡령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함은 물론, 그 파생이익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함(김영은 변호사).
-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공무원범죄'라는 말 대신 죄를 지은 특정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뜻을 가진 '특정공무원범죄'라는 용어를 써야 함(황영하 총무처장관).

- 법의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뜻이므로 '공무원범죄'라는 용어는 별 문제가 없음(최형우 내무부장관).
- 인청북구청 세금횡령과 관련해 새로 제정하려는 「범죄자재산몰수법(가칭)」은 제정 필요도 없으며 법이 의도한 대로 집행될 수도 없다고 봄(강신옥 민자당 의원).
- ①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재정보증인의 연대책임을 묻고 부정한 재산의 제3자명의 은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②공직자가 부정하지 않은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정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한다면 위헌시비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간접적인 수단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③몰수판정 이후 효력을 발휘하는 몰수제도가 부패예방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며, ④부정범죄수익이 지하경제화하거나 뇌물 및 부당이익을 모두 소비한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재산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고, ⑤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재직기간 기준 5년 미만은 4분의 1, 5년 이상은 2분의 1)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부정부패 공직자의 경우는 연금 및 퇴직수당 전부를 몰수하는 방안을 제안함(강성남 국회입법조사분석관 “공무원 부패방지와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보완책”).
- 뇌물·횡령·배임 뿐 아니라 '공무상의 비밀을 이용해 축재하는 경우'까지도 특정 공무원범죄에 포함시키고, 일반형벌의 경우와 같은 특례법상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공무원처우개선을위한특별법(가칭)」을 함께 마련해야 함(경제민주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경향 94.11.28., 2면; 조선 94.10.11., 15면; 서울 94.11.15., 5면; 세계 94.11., 4면; 한국 94.12.2., 29면

○ 공무원인사제도개혁 입법의견

- ①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의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되 경찰 및 소방직에 적용하고 있는 정년제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②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계급정년제를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③각급 인사위원회에 일임되어 있는

징계권중 파면, 해임, 정직등 중징계는 인사위에 맡기고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는 기관장에게 징계권을 부여하는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함(정부).

: 국민 94.11.7., 1면

○ 공원경찰의배치와직무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주요 자연보호구역이나 공원내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권을 갖는 이른바 '공원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게 함(내무부).

: 동아 94.10.20., 2면

○ 공적연금제도관련 입법의견

- 각출금액을 더 높이고 지급금액을 낮춰야 하고, 국민연금(60세이상)과 같이 다른 연금에도 지급개시 연령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정하더라도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경과조치로는 ①지급개시 연령을 수년간에 걸쳐 점차 높여가는 방법, ②지급개시 연령전 연금을 타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받을 연금의 일정 부분을 깎고, ③비록 퇴직했더라도 다른 직장을 갖고 있어 연금의 필요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문형표 KDI연구위원).

: 중앙 94.11.17., 28면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재산등록의무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금융재산 실사를 위해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직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1차로 세무분야는 물론 검찰사무직과 감사원 및 감사부서의 9급이상 공무원 전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정하기로 함(당정).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금융재산신고누락 의혹 등'으로 규정함은 표현이 너무 애매하여 범위가 포괄적임(금융계).

- 재산공개의무가 없는 2급이하 공무원의 금융거래자료도 금융재산 신고누락 의혹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은행본점 전산실에 일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공직

자윤리위원회).

- 특정부서 근무자만 재산등록대상으로 하면 타부서 직원과의 위화감도 문제거리와 인사교류때마다 등록대상자가 바뀌는 번거로움이 있어 고위직처럼 부서를 구분하지 말고 직급에 따라 일정계급이상의 공무원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함(내무부).

: 조선 94.10.25., 11면; 동아 94.11.9., 11면; 중앙 94.10.16., 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88면) · 제94-5호(92~93면) 참조

○ 부정부패방지관련 입법의견

- 근본적인 뇌물범죄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선물신고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제대로 활용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거나 특별검사제를 채택해야 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국처럼 내부자고발을 장려하는 입법조치도 서둘러야 함(오영근 인하대 법학과교수).
- 부패공직자 처벌근거가 「국가공무원법」, 「형법」,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규로 분산되어 있는데다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패조사 및 부패사범 소추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조직·직무상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윤대범 행정학박사).
- ①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개혁방안으로 내부비리 고발자보호와 특별검사규정, 재산몰수 등을 담은 단일 「부정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과 감사원의 기능강화, 독립된 '부정방지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므로 감사원장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독립기관 또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직자의 윤리기강확립을 담당하는 '국가기강위원회(가칭)'를 감사원 안에 설치함. ②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선물신고 대상을 증여자가 외국인일 때로 한정해 일반공무원의 부패근절과는 무관하므로 재산공개의 진실성을 검찰수사에 의존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에 교육자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일정수 이상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재고하며, ③고지거부만으로 재산등록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직·비속의 재산도 최소한 등록은 하도록 강제해야 하고, ④「공직자윤리법」에 2년이내로 규정된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기간을 10년이내로 늘려야 함(강경근 승

실대교수).

: 국민 94.11.18., 4면; 경향 94.12.4., 15면; 서울 94.12.9., 4면

○ 정부조직법 · 정부조직법시행령 개정의견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신설하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정부조직을 크게 개편하기로 함(당정).
- 각 부처의 국단위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과단위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각 부처 직제(시행령)를 개정하여야 함(조선일보 해설).
- 「헌법」 제95조에 의하여 '행정각부'만 영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석함은 무리이므로 원이나 처의 행정조직에도 영제정권을 주어야 함(한국일보 해설).
- 각 부처의 장관에게 과단위 이하의 조직편성에 대한 자율권과 외부인사 영입권을 부여하도록 함(경제기획원 당국자).

: 조선 94.12.4., 1면 · 3면; 한국 94.12.7., 11면; 조선 94.12.8., 1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1면) · 제10호(77~78면) · 제12호(76면) · 제13호(57면) · 제94-2호(82면) 참조

○ 지방세법 개정의견

- 토지개발공사 ·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갖고 있는 땅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감면규정의 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95년부터 1백%를 부과하고, 공사를 위하여 땅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비단 건설부 산하기관만이 아닌데 이들 기관에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기는 어려우며, 감면은 점차 축소해 나아갈 것임(내무부).
- 토개공이나 주공 등이 갖고 있는 땅은 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다 과중한 종토세 부담을 안길 경우 택지나 공장용지원가에 전가되어, 결국 수요자들만 더 큰 부담을 안게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부지를 원가대로 공급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걸들게 됨(건설부 · 토지개발공사 등).

: 중앙 94.10.19., 2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8면) · 제5호(49면) · 제94-1호(52면) 참조

○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관련 입법의견

- ①지방자치체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단체장의 임명제청권이 사라진 대신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대체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중앙정부의 인사권 장악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고, ②지방자치단체의 연임을 3회로 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한겨레신문 해설).

: 한겨레 94.12.6., 4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9~40면) · 제2호(43~44면) · 제5호(49면) · 제10호(79~80면) · 제13호(57~58면) · 제94-2호(82~83면) 참조

◎ 社會 · 文化 · 教育

○ 개인과외교습과세관련 입법의견

-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개인과외교습에 대해 과세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해왔으나, 고액개인과의의 성행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명문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과외에 대해서는 소득액이 적고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재무부).

: 조선 94.10.17., 2면

○ 경륜 · 경정법 개정의견

- 사행심 조장의 근본적 뿌리가 되는 비인간적인 경륜장업은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며, 6공시절에 제정된 이 악법은 마땅히 문민정부의 개혁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함(조인형 강원대교수).

: 국민 94.10.15., 28면

○ 교육관련 입법의견

- 「교육자치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역별 ·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화하고 체험위주의 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윤리를 바탕으로 한 국제화 교육을 확대하겠음(김숙희 교육부장관).

: 서울 94.10.18.,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54~55면) · 제4호(30~31면) · 제94-2호(84~85면) 참조

○ 국민연금법 개정의견

- 현재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으로는 연금기금의 파행운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장관의 당연직 위원 축소와 민간대표의 참여가 확대돼야 함(전문가들).
-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단기체류자일 경우 퇴직시까지 낸 국민연금의 원금을 반환해주지 않기로 함(보건사회부).
- 국민연금의 고액 및 장기 체납자를 연금관리공단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국민연금법」에 신설해야 함(검찰).

: 한겨레 94.10.17., 2면; 조선 94.11.16., 29면; 세계 94.11.23., 25면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①성역할 분업제도와 인식의 개선, 가정·직장 양립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남녀근로자의 인간존엄·평등권·근로권을 보장하고, 고용기회 및 대우의 차별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명시하며, ②모집과 채용에서 성차별 금지 유형의 구체적 명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③직장내 성희롱 문제, 신인사제도, 비정규직 문제 등 새로운 성차별 유형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마련하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 가해자와 함께 사용자에 대한 벌칙과 책임규정을 삽입해야 하며, ④법위반시 처벌규정을 3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해야 함(신미숙 노동위원, 여성단체연합).

: 경향 94.11.14., 15면; 국민 94.11.15., 11면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①그동안 금지되어 오던 「노동조합법」상의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일부 완화, 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은 계속 금지하지만 산별연맹 이상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②「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와 「노동조합법」의 노조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폐지하되 정치자금 제공 등의 문제는 「정치자금

법」 등 정치관계법의 규정에 따르며, ③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평균임금의 70%인 현 휴업급여를 60%로 하향조정 함(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법안기초소위원회 법개정 초안).

- 제3자개입 금지조항삭제나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폐지는 이상론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다 하겠으나 우리 노동계의 현실을 볼 때 급진적 측면이 없지 않음(세계일보 사설).

: 조선 94.10.18., 1면; 세계 94.10.19.,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5면) · 제2호(45면) · 제5호(50면) · 제6호(76~77면) · 제7호(61면) · 제8호(78면) · 제12호(79면) · 제9호(94면) · 제94-1호(57~58면) · 제94-2호(89면) · 제94-3호(93면) · 제94-5호(99~100면) 참조

○ 노동위원회법 개정의견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고 구제결정이 났는데도 상당수 기업들이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구제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벌조항을 크게강화함(남재희 노동부장관).
- ①노동부산하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준사법기구인 점을 감안해 국무총리 산하로 현재 1급으로 되어있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한 현행 「노동위원회법」 제5조를 삭제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사·재정권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갖게 하여 고질적인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②노동위원회를 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노동위원회법」의 현행 골격을 대부분 유지하도록 함. 다만 현재 노동부장관에게 주어져 있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해 위원장의 권한을 일부 강화함(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노동위원회법」 개정시안).

: 한겨레 94.10.18., 22면; 중앙 94.10.19., 2면

○ 대학원교육관련 입법의견

- 법학, 신학, 의학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학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학위 국가 인정제'를 도입하며 박사학위 명칭을 전공학문 분야별로 세분화 함
(이기준 교육개혁위원회 제4소위원장(서울대 교수)).

: 세계 94.11.11., 22면

○ 대학재정관련 입법의견

- 중앙정부 교육예산의 일정부분을 고등교육예산으로 편성하고 각 대학마다 일정기간 거치, 무이자 상환의 학교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교육과 관련있는 부처(국방부, 상공부, 보사부, 체신부, 문체부, 과기처 등)의 예산중 일부를 연구지원예산으로 배정하며, 민간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함
(이기준 교육개혁위원회 제4소위원장(서울대 교수)).

: 조선 94.11.11., 28면

○ 대학정원자율화관련 입법의견

- ①1단계(96학년도부터)는 교육부가 교수확보율 등 7개의 교육여건지표를 평가, 계열별 정원규모만을 통보하고 각 대학은 이 범위안에서 정원을 자율조정하도록 하고, ②2단계(97학년도부터)는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은 교육여건지표범위안에서 대학개편을 포함, 증원규모를 자율책정하도록 하며, ③「수도권 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수도권소재 56개대와 국공립대 24개교, 의료 및 사범 계정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정원자율화 대상은 53개 지방사립대가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수도권대학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국립 24개대는 국가정책상 필요한 인력 양성차원에서 총정원의 10%이내에서만 증원할 수 있도록 하며, ④3단계(99학년도부터)로는 모든 대학이 정원을 자율 책정하도록 함. 다만 의학, 사범계는 인력수급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일단 자율화대상에서 제외, 현행처럼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증원규모를 결정함(교육부).

: 동아 94.12.9., 3면

○ 대학학사제도관련 입법의견

- ①대학별로 특성을 살려 2, 3, 4학기제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현재 16주이상으로 법정화 되어 있는 학기당 수업일수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

며, ②현행 졸업이수학점중 교양학점의 배점기준을 폐지, 교양교육과정의 이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에 일임하고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수도 계열별·대학별·학과별로 그 특성을 반영, 대학별로 차등화하도록 하고, ③학점의 개념을 대학자율로 설정하도록 하여 교과목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고 학기당 취득기준학점과 교과수도 각 대학이 선택한 학기제에 적절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함(전성연 고려대교수).

- 대학조직, 전공이수학점 및 교양필수학점, 수업연한 등을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이기준 교육개혁위원회 제4소위원장(서울대교수)).
- 각 대학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학기구분 수업일수, 졸업소요학점 등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학칙으로 정해 자율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의 학년을 3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2월말까지 마치도록 정한 규정은 초중고교 등 기본학제와 연계되어 있어 폐지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4년 내지 6년(의·치예과)으로 정해진 대학의 수업연한은 전문대졸업자의 학위인정 문제와 겹쳐있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워 앞으로 전문대개혁에 맞춰 검토하기로 함. 기존의 '학기제등록금제' 외에 신청 학점수를 감안해 등록금을 책정하는 '학점당 등록금제' 등 다양한 제도를 일선 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할 방침임(교육부).

: 한국 94.11.11., 30면; 동아 94.12.9., 3면

○ 대학행정관련 입법의견

- ①대학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교육부로부터 분리, '국가대학관리기구'를 신설하고, ②총장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와 '교수자치기구'를 법제화하며 그 구성과 운영방법, 기능 등은 법령으로 제도화함(이기준 교육개혁위원회 제4소위원장(서울대 교수)).

: 한국 94.11.11., 29면

○ 방과후아동지도 프로그램관련 입법의견

- 해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의 확충은 아동·가정·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과제로, 사회의 깊은 관심과 신속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강양원 교육전문기자·철학박사).

- 국민학교학령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규정과 아동지도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함(여성개발원).

: 중앙 94.12.8., 12면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설립자와 재산출연자가 아닌 집단에서 추천한 자가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법인'의 자주성 침해이고 경영권 침해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설립자'의 경영권 침해일 수는 있으나, 법인의 경영권 침해는 아니라고 볼 것이며, 설립자와 법인을 동일시하는 낡은 사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김재웅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이사회 구성 방안으로 설립자 및 재산출연자와 이들이 추천한 자를 3분의 2로 하고, 동창회, 학부모, 직원,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3분의 1로 하되 그 중의 3분의 2는 교수회가 추천한 자로 함(교육개혁위원회).
- 이사회의 구성과 수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설립자와 법인의 자주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경영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위헌의 소지마저 있음(법인협의회).
- 기본적으로는 교개위 제안의 방향에 찬동하나, 중요한 사안의 결정선이 3분의 2임을 고려할 때 법인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에는 비설립자 추천자의 비율이 너무 낮고, 이사회에 친족 참여 범위도 제한해야 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교육개혁위원회는 '학교 설립자나 재산출연자 및 이들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 정수의 3분의 2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를 그 설립자나 재산출연자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재단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이나 사학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정이므로,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교수회의나 교무회의에 학사운영의 일정권한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이사회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박석무 민주당의원).
- ①교육개혁위원회의 교수협의회의 폐지발상은 곧 총장 직선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사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한다는 것은 총장 인선 및 결정권을 거의 전적으로 재단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하고, ②교수협의회가 주도하는 총장 선출 방식이 문제점을 갖고있음은 사실이므로 총장의 선출방식을 평교수,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대

학인의 중지를 모아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이규환 한국교육연구소장).

: 한겨레 94.11.22.,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7~78면) · 제9호(96~97면) · 제94-2호(90~91면) · 제94-3호(96면) 참조

○ 영유아보육법 개정의견

- 사업주의 직장탁아소 운영비부담 전면삭제 등 보사부가 낸 개정시안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직장탁아의 활성화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으며, 직장탁아소 설치 의무기준을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으로 낮춰야 하며,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은 현재대로 80%선으로 유지해야 함(직장탁아소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 병원노조).
-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설치에 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완화하기로 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때 사업주가 운영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 보육료는 자율화 함(당정).
- 보육대상을 근로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6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여 직장탁아의 활성화를 꾀하고, 직장시설 설치의 무규정을 강화하고 벌칙을 새로 마련함(민자당 · 민주당).
- '수혜자부담'으로 된 보육비용원칙이 개정되어 국가 · 수혜자의 공동부담으로 되어야 하나, 부담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원폭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노동부가 전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여성 · 노동계).

: 동아 94.10.22., 17면; 중앙 94.10.30., 3면; 경향 94.11.14., 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4~45면) · 제8호(83~84면) · 제94-3호(97면) · 제94-5호(101~102면) 참조

○ 영화등영상물관련 입법의견

- 영화 등 영상물의 관람허가등급을 학제 기준에서 연령별 기준으로 세분화시키

고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온 영상물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시하여 심의 결과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줄이기로 함(당정).

- 수년전부터 논의 되어왔던 성인용극장의 신설문제도 재고하여 음란물과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외영상물을 상영하는 극장이 필요함(세계일보 사설).

: 서울 94.11.14., 18면; 세계 94.11.15.,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4면) 참조

○ 외국인교수의 법적지위관련 입법의견

-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외국인이 교수가 될 수 없다면 1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온 관행이 깨지는 것은 물론, 현재 추정되는 4백여명의 법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조선일보 해설).
- ①사립대가 전체대학의 80%가 넘는 실정에서 사립대의 전임교수 역시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외국국적자는 곤란하므로 외국인은 '초빙교수'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정식교원(교수)으로 임용될 수 없음. ②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많은 외국인 교수 또는 총장이 있었던 현실을 관계법령의 정비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지나친 방임이자 직무유기이며, ③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을 정식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존 법령을 시정·보완하는 입법조치를 해야 함(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부(양동관 부장판사)).
- 「교육공무원법」 제31조는 '초빙교수의 임용규정'일 뿐 '교원자격'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어 담당교수는 외국인 채용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기본방향설정과 학교행정 등을 맡는 총학장 등 보직 교수만 내국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선에서 관계법률의 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임(법조계, 학계).
- ①교육경력등을 규정한 '교수자격요건'이나 상벌·징계 등에 관한 '복무규정'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으나 교수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하는 국적문제는 준용대상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국인도 총장이나 교수로 임명될 수 있음. ②현재 사립대교수의 법적지위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면서 대학교원의 경우 외국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

음(교육부).

-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교수채용은 외국의 선진학술을 받아들인다는 측면 외에 외국대학과 학술교류 등 여러 이점이 있으므로 현행법의 모순점을 보완하도록 함(포항공대).
- 우리나라 학문의 질적향상과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국인이라도 대학 교수로 초빙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이 개정되어야 함(이기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 조선 94.11.10., 30면; 동아 94.11.10., 30면; 동아 94.11.11., 30면; 중앙 94.11.11., 22면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비디오방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하고, 단속을 해도 업자가 법원에 제소해 정부가 패소하는 상황에서 법개정을 통한 비디오방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야 함(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 비디오방의 양성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비디오방에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뉴미디어의 한 종류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함(오인환 공보처장관).
- 비디오방을 불법으로 해 놓는 것이 단속하는데 더 편리할 수 있음(이충길 보훈처장관).
- 해악은 늘어가는데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임(황길수 법제처장).

: 동아 94.11.15., 4면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91년 제정된 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학교의 현장교육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위원회를 준자치단체로 인정하여 예·결산의결권과 함께 조례 제정 및 개폐권을 부여해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며,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도 입후보 등록제로 전환해야 함(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서울 94.11.9.,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55~56면) · 제8호(86~87면) · 제12호(82면)

○ 청소년유해인쇄 · 영상물 규제관련 입법의견

- 영상물 심의때 어린이 · 청소년 대상물의 경우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반심의와 다른 전문위원을 운영하는 등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유통부문에서 대여점 · 영화관 등에 대한 사회적 감독과 처벌이 있어야 함(김광옥 교수, 수원대 신문방송학과).
- 청소년 유해 인쇄 · 영상물에 대한 현행법 체계가 너무 산만하므로 ①성인 및 청소년 대상의 음란성 · 폭력성 등 각종 유해매체 규제심의에 관한 총괄적 법률 제정, ②청소년 대상의 개별 법률제정, ③「청소년유해물규제기구설치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함(박형상 변호사).

: 경향 94.11.4., 12면

○ 학교급식법 개정의견

- '급식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출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의 규정중 지방자치단체를 종래는 도로 해석, 시까지는 그 혜택이 미치지 않은 현실을 감안, 시도 명문화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부천 학부모연대).
-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라면 그에 따르는 각종 시설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함(최순영 의원, 부천시의회).

: 한겨레 94.12.6., 4면

○ 효도법(가칭) 제정의견

- 효의식 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결들인 「효도법(가칭)」을 제정해야 함(곽정출 민자당의원).

: 국민 94.11.4., 4면

◎ 産業 · 經濟

○ UR이행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UR비준안의 국회비준에 앞서 농업을 보호 · 희생시킬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법형태의 UR이행준비법을 제정해야 함(강희찬·이규택의원).

- 우리 정부와 국회가 UR이행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미국처럼 '국내법 우선'을 조문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UR협정에 따르면 농업분야에서 가격보조·생산보조는 감축해야 하지만 환경보존, 국토균형개발, 생태계보존, 문화전통보전, 홍수가뭍피해축소 등 21개 부문을 농민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UR이 허용하는 이러한 취약부문 지원조치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함(김성훈·장원석 중앙대 교수).

- WTO협약의 범위 안에서 미국이나 EU와 같은 UR이행법 제정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 경향 94.11.4., 2면; 중앙 94.12.8., 1면; 서울 94.12.9.9., 4면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개정 의견

- 사정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비리혐의 공직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전산부서에 거래사실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정부).
-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엔 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실에 조사대상자(일반인 포함)의 모든 금융거래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재무부).

: 중앙 94.10.22., 2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4~65면) 참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①공장설립승인 등을 얻은 경우 기업거래계약의 허가·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사업내 직업훈련 중 향상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훈련생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②수출승인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입 승인제도를 폐지하며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③유통유통매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허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④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배출부과금을 매기도록 하던 것을 허용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함. ⑤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전부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⑥준도시지역안에서 초지를 전용해 공장설립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의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당정).

: 국민 94.11.30.,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0~91면) · 제94-1호(65~66면) · 제94-2호(96~97면) · 제94-4호(84~85면) · 제94-5호(106면) 참조

○ 대금업법(가칭) 제정의견

- ①사금융시장이 서민층에 대한 고금리 대부와 가혹한 징구행위, 탈세 등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②정부에 등록을 한 사채업자는 합법적으로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영세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돈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며, ③ 대금업자에 한해 현재 이자율 최고한도를 연 25%로 제한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 이들이 일정한도내에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재무부).

: 국민 94.10.20., 8면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가격 및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5%까지 대폭 올리고, 과징금 부과대상을 종래의 가격남용외에 출고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 전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확대함(오세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조선 94.10.26., 1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4면) 참조

○ 법인세법 개정의견

- 조세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에 있어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 중과하는 차별적 조세정책을 실시해야 함(유돈우 민자당의원).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인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음(박재윤 재무부장관).

: 경향 94.11.3.,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2면) 참조

○ 산업보호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현 시점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 동의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농업은 물론 금융·보건·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 비준안과 저촉되는 독자적인 법 제정이 불가능하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비준동의안 통과에 앞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산업보호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함(이규택 민주당의원).

: 한겨레 94.10.18., 5면

○ 세정개혁관련 입법의견

- 세무행정의 개혁을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의 대폭완화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 실화, 납세자항변권의 강화, 「내부고발자보호법(가칭)」제정 등을 제안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향 94.12.2., 23면

○ 소비자협동조합법(가칭) 제정의견

- 지금까지 법적 근거없이 개인사업자나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각종 소비자협동조합에 공공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제도권 안으로 흡수, 국가의 감독아래 둠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소비자협동조합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①일정수 이상의 발기인이 조합을 창립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관할 등기소 설립등기도 하고, ②협동조합의 업무는 공동구판사업, 공동이용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에 한정하고, ③금융 및 공제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함(경제기획원).

: 경향 94.11.29., 9면; 서울 94.11.29., 9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백화점·신용정보회사 등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가칭)」안을 마련함(재무부).

: 중앙 94.10.18.,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4호(88면) 참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고치도록 권고해서 듣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함(공정거래위원회).
- 시정권고에 대해 공정위가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당사자간 계약의 자유 및 사적 자치원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여하는 결과를 가져옴(법조계 등).

: 중앙 94.11.16., 2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58면) 참조

○ 어린이안전강화관련 입법의견

- OECD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한 이사회 권고안'을 수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중 의약품·장난감 등 각종 제품에 대해 어린이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제정 사항, 제도정비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임(정부).

: 중앙 94.11.4., 25면

○ 외환제도관련 입법의견

- ①95년부터 누구든지 은행에서 연간 1만달러까지는 외화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보유는 금액제한없이 완전히 자유화되며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에 예금을 할 수 있게 되며, 건당 5천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되고, 한달 이내의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1만달러로 늘어나며 오는 98~99년중 자유화됨. 개인의 해외부동산구입은 연간 30만달러, 해외 증권투자는 5억원까지 각각 가능하게 되며 투자이민시 4인가족기준 1백만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과 첨단기술업종기업에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되고 제조업 등 비금융업체의 해외금융회사설립도 허용되고 ②기업의 해외예금과 증권투자의 한도는 내년에 1백만달러와 1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 뒤 기업부동산투자자와

함께 96~99년중에 자유화되고, 외자조달수단인 해외증권발행과 상업차관, 외화대출, 연지급수입, 수출선수금, 현지금융의 한도가 확대되거나 제한적으로 신규허용된 뒤 96~99년에 모두 자유화되며, ③외환관리법규 위반시 형사처벌위주를 가급적 행정제재위주로 전환할 방침임. ④이를 위해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외환제도개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외환제도개혁이 마무리되면 현행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되, 우선 법개정 전에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재무부 외환제도개혁안).

: 조선 94.12.6., 1면; 세계 94.12.6.,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5호(111면) 참조

○ 전문할인판매점관련 입법의견

-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전문할인판매점에 대해 ①현재 0.3~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제를 일부개정하여 전문할인판매점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0.3%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②땅을 산 뒤 유희지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 건물을 지어야 하는 유예기간을 유통업체의 경우 현행 2년인데 할인점에 대해서는 1년만 적용하며, ③신용보증기금의 유통업체에 대한 보증 한도는 현재 매출액의 6분의 1에서 할인점에 한해 4분의 1로 늘려 자금조달을 쉽게 하도록 하고, ④지금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안에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매장만 들어설 수 있으나 할인점도 들어설 수 있게 하고 현재 1천평방m(약 3백2평) 이하 규모만 들어설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도 할인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함. ⑤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에도 전문할인점을 별도로 명시, 이 법에 의해 조성되는 유통단지에 싼 값으로 땅을 구입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상 전문할인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상공부가 개정할 「도·소매업진흥법」에 할인점을 종합점(백화점)이나 양판점과 구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경제기획원).

: 동아 94.12.1., 10면

○ 전자게임산업관련 입법의견

- 게임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전자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변여건을 조성하고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게임기설치와 영업을 규제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함(상공자원부).

- 전자게임을 첨단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병역특례혜택을 주고, 게임산업에 대한 여신제한 등 각종 규제를 없앴(상공자원부).

: 세계 94.11.3., 9면; 서울 94.11.3., 9면

○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경영·정보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장기위탁체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중소기업지원체도는 현행 골격을 당분간 유지하되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경쟁력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쟁제한요인을 개선하기로 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내년에 45개, 97년에 47개를 각각 해제해 1백80개에서 88개로 줄일 방침임(상공자원부).

: 세계 94.10.27., 9면

○ 지적재산권관련 입법의견

- ①96년부터 상표권에 색채 개념이 추가로 도입되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 등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하게 되고, ②식물변종 발명의 경우도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정부에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차원에서 제출취지 외의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③일반 저작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현행 창작후 50년에서 공표후 50년으로 연장되고, ④두가지 기준(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 출원일로부터 20년)을 다 적용받고 있는 특허존속기간은 국제기준에 맞춰 하나만(출원일로부터 20년) 적용하며,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의 경우 강제실시권(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발동요건중 수출을 위한 경우는 제외하고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로 한정함(제2차 경제국제화기획단회의).

: 중앙 94.10.26., 3·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7면) · 제8호(100~101면) · 제12호(90~91면) · 제94-2호(100면) 참조

○ 토지세제관련 입법의견

- 내년중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토지관련 5대 세제에 대해 취득·보유·이전 단계별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임. 종합토지세는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나가고 양도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장기 계획에는 토초세의 존폐문제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음. 우선 현재 공시지가의 20% 수준인 종토세 과표를 내년중 30~40%로 올리고 그 이후 공시지가를 종토세의 과표로 전환하되 중산층의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세율과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함(박재윤 재무부장관).
- 현재 9단계·최고세율 5%인 종토세의 세율체계를 5~7단계·최고세율 3%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취득세·등록세 등 토지관련 지방세제도 내무부와 협의해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힐 방침임(재무부).

: 서울 94.10.16., 1면; 조선 94.10.1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7~88면) · 제10호(87~91면) · 제13호(77면) · 제94-5호(116면) 참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하도급비리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입찰 참가자격만 제한하던 것을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저가하도급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는 '요주의공사'로 지정, 관계기관에 통보해 감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직불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정부).
- 현행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박명근 민자당의원).

: 조선 94.10.23., 11면; 경향 94.11.3.,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8면) · 제94-2호(102면) 참조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①현재 재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한은총재의 임면 제청권을 국회의 동의로 바꾸고 한은총재가 한국은행의 최고이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도록 하고, ②한은총재의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기도중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신분보장조항을 두고, ③금통위의 구성에 대해 기존의 농수산부, 상공자원부 장관추천위원을 각 2명에서 1명씩 줄여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넣도록 하고 금통위원 중 5명을 임기 5년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④금통위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무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한은에 대한 업무검사권한도 재무부에서 감사원으로 이관하도록 하며, ⑤은행감독원의 분리문제에 대해 통화량 관리와 관련한 감독업무는 한은이, 예금자 보호 및 법규준수 감독업무는 재무부가 갖도록 함(경실련의 「한국은행법」 개정 청원).
-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이 민간자율성과 시장기능 중시에 있으므로 정부는 금융제도와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통화신용정책 등의 업무는 한은으로 넘기는게 바람직함(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 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효과가 나타나려면 많은 규제완화와 권한의 분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재무부장관이 맡던 금통위원장을 재정경제원장이 계속 맡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한은 총재가 위원장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 통화정책은 한은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민자당).
- 금통위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 금통위 위원장에 한은총재 임명, 은행감독원의 유지, 은행 몫의 금통위원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함(민주당).
- 은행의 자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부터 실현하는 것이 첩경임(한국일보 해설).

: 국민 94.10.26., 7면; 동아 94.10.27., 10면; 한겨레 94.12.6., 2면; 한국 94.12.9.,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1면) · 제94-5호(117면) 참조

○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의견

-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출입 화물에 하역료 외

에 별도로 화물유통기금을 부과, 이를 물류단지 건립에 쓰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집·배송단지나 창고 등 물류단지를 세울 경우 정부가 부지를 매입해 주는 등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이를 위해 ①우선 내년에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창고·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 등의 물류단지를 짓는데 쓰고 물류비 표준화 및 전산화에도 지원, 이를 위해 교통부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②그린벨트 등 국·공유지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경우, 앞으로는 현행 「도시계획법」 대신 개정될 이 법을 적용하여 그린벨트에 집·배송단지를 지을 때 지금은 구역을 해제해야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해제하지 않고도 정부가 땅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으며, ③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업체에는 세제 혜택을 주며, 물류단지의 관리, 물류시스템의 전산화, 물류비용의 계산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공인자격사인 '물류관리사제'를 신설함(교통부).

: 서울 94.10.20., 12면

◎ 農林·水産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도매시장관리공사와 지정도매법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도매시장 관리와 운영을 일원화해야 유통비리가 근절되므로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이원화를 전제로 한 법개정안에 반대함(국회 농림수산위).

: 조선 94.10.28.,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4~106면)·제94-4호(91~92면)·제94-5호(118면) 참조

○ 농·수·축협동조합관련법 개정의견

- ①상임이사 및 부장급이상의 간부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면하고 차장이하의 일반직원은 부회장이 임면하도록 하며, ②현직 중앙회장은 오는 98년초(축협은 97년 6월)로 예정된 임기만료시까지 현행대로 인사권을 갖도록 수정하고, ③중앙회 상임감사를 회원조합원으로 제한했던 자격제한을 삭제하기로 하며,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현직 이사의 임기

는 보장하기로 함(경제차관회의).

: 동아 94.10.20., 11면

◎ 建設

○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20채미만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자도 앞으로는 분양·공용·전용면적을 속이지 못하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그 근거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이를 위해 ①「건축법」을 바꿔 20채미만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할 때는 분양면적 및 전용·공용면적 등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②「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업체 기준을 하향조정해 5채나 10채 이상 집을 지어 분양할 때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건설부).

: 중앙 94.10.18., 2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6면)·제12호(100면)·제94-1호(74면)·제94-2호(109면) 참조

○ 국유지관리관련 입법의견

- 지방자치체가 본격 실시되면 각 시·군이 국유지보다 공유지업무에 힘을 집중적으로 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제에 국유지를 전담할 별도기관을 두어야 함(재무부).

-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보다 기존의 토지전문기관을 활용해 그 기능을 보강해주는 것이 현명한 일로 판단되며, 가장 적합한 국유재산관리전문기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임(중앙일보 기획·연재).

: 중앙 94.11.27., 27면

○ 도시재개발법 개정의견

- 주택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의 참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되,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이 요청할 경우 주공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일단 주택재개발 사업시행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소

방법」 등 10여개 관계법령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재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안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건설부).

- 불량주택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유지 임대제도를 활성화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주택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체계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 함(국토개발연구원).

: 중앙 94.10.28., 25면

○ 부실공사방지관련 입법의견

- ①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하여 95년부터 부실 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 일정벌점 이상일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②외국감리 회사 진출허용, 설계감리제도 도입, 감리권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업무연락 관 파견제도 폐지, 책임감리제도 예외인정범위를 대폭 축소하며, ③부실공사 현장을 적발한 경우 건설부장관이 공사의 시공 및 감리정비를 비롯한 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건설부).
- 부실공사근절대책은 개괄적으로 관련법령의 개정,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요약되는데 ①법령의 경우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을 개정해 입찰과정의 비리소지를 비롯해 하도급의 폐해, 사후관리의 소홀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하고, ②제도와 관행의 경우 현행 최저입찰제, 감리제도 등을 완전히 개선·보완하여 부실공사 발생시 시공자와 감리자의 공동책임이 되도록 하고, ③건설부정과 관리소홀 등에 대하여 강도높고 예외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민주당).
-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보험제를 도입하여 모든 공공장소에 책임감리자를 두고, 부실공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면허를 아예 취소해 건설분야에서 완전히 추방하기로 하며, 감리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함(건설부).
-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시설물안전관리공단(가칭)' 등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설을 추진하여 공사비 단가의 현실화, 최저가 입찰제의 개선, 교

량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제의 도입등을 추진하고,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도 전면 재검토, 부실공사업체를 건설업계에서 완전 추방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이영덕 국무총리).

- 부실공사의 설계자나 감리자에 대해서도 시공자에 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며, 특수교량에 대한 중앙설계심의제를 강화하고 저가낙찰공사현장에 감리요원을 상주하게 함(김우석 건설부장관).
- 부실공사를 막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건설관련법령을 재검토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하며 시공회사의 하자보수기간도 연장해야 함(김상구·이원형 의원).
- ①대형건설사고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건설기술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감리회사의 참여범위를 명시한 대상공사규정을 폐지하고, ②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을 막기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해 설계심사와 감리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 함. ③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공공공사 업무연락관의 권한을 업무연락, 민원해결, 문제점 파악 등에만 국한시키고 감리원들의 제시공보고 및 현지실정보고, 시공중지 등의 권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④부실시공의 주원인인 공사기간과 관련하여는 시행령에 적정공사기간을 명시하고 하자담보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회사명, 관련기술자, 하자내용 등을 명시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하자실명제'를 도입함(관계부처 차관회의).
- 설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설계감리제도 도입이 요구됨(장승필 교수, 서울대 공대).
- ①건설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사업선정의 우선순위 및 조사·계획·설계·시공단계의 적정한 설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시행절차법(가칭)」을 제정해 정치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법적 테두리에서 건설한 건설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②'최적낙찰제(종합낙찰제)' 도입과 함께 「건설기본법(가칭)」을 만들어 건설산업의 관리시스템을 통합해야 하고, 사업은 주관 부서별로 시행하더라도 '통일된 품질관리·안전관리·건설시장개방에 따른 대책'등을 수립하고 관리할 부서는 한 곳을 지정해 운영해야 함(김수삼 중앙대

공대교수).

- ①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최적격 낙찰제 도입과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 확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②교량과 터널 등 주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이들 시설물의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불성실하게 해 여러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③시설물의 결함 등을 이유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주체가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는 민간 시설물에도 안전상 필요할 경우 철거,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당정).
- ①감리회사가 행정기관의 의사에 반하는 공사 중지나 재시공·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공사를 총괄 감리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이 기구가 발주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청와대 직속의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같은 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②입찰가·기술·시공능력·자금력·부실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최적업체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도를 도입해 무리한 덤핑과 하도급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고, ③실제 중대한 하자는 10년 가량 흐른 뒤에 나타나므로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하자보증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중대한 구조적 결함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 무한책임을 맡겨야 함(유재현 박사, 경실련 경제정의 연구소장).
- 도시건축행정부문은 국제화와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 산발적인 관련법과 제도를 통·폐합하는 등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 설계·시공·준공 과정의 경우 건축사의 업무가 명확하지 못한 만큼 설계업무와 공사감리업무를 구분하고 책임한계를 명시해야 하며, 낙찰방식의 경우 공사규모를 막론한 제한적 저가입찰제도를 적용해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해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음(조성룡 우원건축사무소장).
- 95년 한국의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국내 건설분쟁 중재제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상설기구로 가칭 '대한건설중재원'을 독립법인으로 신설하여 건설분쟁의 조정 및 중재, 관급공사의 준공검사(민간공사는 발주자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요

구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 업무중 건설업 관련사항을 다루도록 함(박준기 중앙대 건설산업기술연구소 연구위원).

: 세계 94.10.22., 8면; 동아 94.10.25., 2면; 경향 94.10.25., 4면; 한국 94.10.28., 11면; 서울 94.10.28., 5면; 서울 94.11.1., 1면; 서울 94.11.3., 4면; 경향 94.11.4., 2면; 중앙 94.11.8., 21면; 경향 94.11.10., 9면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공공시설물에 의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로서 설계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 정기진단 등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의무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며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을 건설부 직속으로 설립하기로 함(당정).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민자당).

: 한국 94.10.26., 11면; 국민 94.11.30., 1면

○ 안전사고방지관련 입법의견

- ①대형구조물에 대한 중대 과실을 저지른 시공업자에 대해 지금까지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리던 행정제재를 면허취소까지로 강화하고, ②96년부터로 예정돼 있는 감리시장을 조속히 개방, 건설업자의 결탁·담합 등을 추방하고 신공법을 채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감리사 또는 해당공법에 감리실적이 있는 감리사에게 맡기도록 할 계획이며, ③도로, 교통, 터널, 지하철, 고속도로 등 대형 정부공사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 대신 입찰가격과 시공기술 능력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적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④7~10년까지로 되어있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기간 또한 20년까지로 늘리거나 하자보수기간과 별도로 시공 뒤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⑤감리사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고 시공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리사에게 공사중지명령권을 부여하는 한편 종합건설면허요건을 강화, 단종 전문면허업체의 육성을 촉진할 방침이고, ⑥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과적차량의 단속

을 강화하기 위해 관장기관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주요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중앙정부의 직권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책임을 진 자치단체의 '시설물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임(당정).

: 서울 94.10.24., 2면

○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의견

-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시행령의 생활환경개선의 내용, 허용행위 범위 및 허가절차 등에 따라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그린벨트안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제주지역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건물이 낡은 그린벨트지역 내의 원주민들의 취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아무런 제약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경우 그린벨트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임(세계일보 해설).

: 세계 94.12.9., 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2~53면) 참조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과적단속관련 입법의견

- 과적단속에 앞서 「도로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개정,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알선업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해야 함(화물운송업자).

- 싼 값에 운송을 하려는 화주의 인식을 고치지 않는 한 과적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화물주도 처벌하기 위해 교통부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각각 벌금을 달리 매기고 있는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를 부처간 협의 중이며, 과적차량단속을 위해 방위병의 공익근무요원 활용, 과적차량 단속요원에 대한 사범권부여 또는 단속업무의 경찰청이관을 추진함(건설부).

: 서울 94.10.28., 22면; 경향 94.10.31., 2면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버스전용차선제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건의, 앞으로는 구청장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중임(서울특별시).

: 중앙 94.12.2.,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86면) · 제94-1호(77면) 참조

○ 수도권교통기획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수도권교통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교통기획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①수도권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유류특별소비세율을 20% 인상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수도권교통특별세'를 신설, 20% 추가 부과하고, ②도심으로 진입하는 1인탑승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서울도심에 위치한 50인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부과하여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며, ③수도권 교통종합기구를 설립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교통부장관 중에서 장을 맡도록 하여 관련부처간 정책조정을 담당하도록 함(민자당).

: 국민 94.11.9., 19면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견

- 통신설비업체가 통신사업에 제1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지분을 제한해야 함(체신부).
- 지분제한을 철폐해야 함(상공자원부).

: 94.10.14.,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4~55면) · 제3호(69~70면) 참조

○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망, 멀티미디어 등 정보산업발전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안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작성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데다 정보화촉진기금의 관리주체를 3개부처(체신부 · 상공자원부 · 과학기술처)로 나누는 것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임(동아일보).

: 동아 94.11.26., 2면

○ 초고속정보통신망관련 입법의견

- 초고속망구축을 위한 공공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조3천억원 규모의 별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보통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대학원과 정보통신고교 설립을 추진함(박성득 체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조선 94.11.11., 1면

◎ 環境 · 保健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의견

〈공해배출시설관련 입법의견〉

-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허가대상을 1종과 2종 사업장으로 국한하고 3~5종 사업장은 신고제로 바꾸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중복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묻되 행정절차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염물질배출량이 적은 85~90%의 중소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상공자원부).
- 현행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를 4종과 5종의 중소규모배출시설에 한해 95년 하반기부터 신고제로 완화하고, 배출부담금을 오염물질 발생량에 비례해 물리는 총량규제도 96년부터 9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규모가 큰 1종 배출시설은 96년부터, 규모가 작은 5종은 99년부터 도입하기로 하나, 4·5종 배출시설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더라도 가동개시 신고를 받아 환경당국이 신고내용대로 배출시설이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허가적 성격의 신고제로 해야 함(경제차관회의).
- 부처 실무협약에서 1·2종 사업장을 제외하고 허가제를 신고제(3~5종)로 바꾸기로 했으나 최종 협약에서 논란 끝에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하고 또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새로 넣기로 함(부처실무협약).
- 수질과 대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상황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환경보전 노력을 포기하려는 것임(경실련).

- 공해배출시설허가제 폐지는 왜곡된 환경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신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악해서는 안되며 환경처의 위상을 높여야 함(배달녹색연합).
- 요식업 영업허가는 물론 당구장과 목욕탕도 정부가 허가를 하는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해배출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가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책임의 방기임(환경처).
- 환경규제는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완화할 경우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따라서 허가제폐지를 철회해야 함(환경단체).
- 시설허가제를 하든 아니하든 배출구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꼭 해야 하는 것이므로 배출구에 대한 감시만 제대로 하면 되며, 시설허가제는 옥상옥의 중복규제로서 오히려 행정력만 분산시켜 시설허가규제와 배출구규제 모두가 부실화될 것임(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교수).
- 신고제로의 전환대상업체가 전국 폐수방류업체 총 2만2백41개 가운데 95%에 해당되는 많은 수이기에 허가제가 폐지되면 언제 어디서 제2의 낙동강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 전국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대함(김상중 서울대 환경과교수).
- 오염배출업소의 85~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공해규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기업활동 규제를 풀다는 명분으로 환경규제마저 푸는 것은 정책리더십에 결함이 있는 것임(동아일보 해설).

〈공해물질총량규제관련 입법의견〉

-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징수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물가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총량규제의 실시 자체를 반대함(상공자원부).
- 2000년 이후로 연기해 기업들이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시간을 줘야 함(상공회의소).
- 공장폐수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방식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로서 총량규제는 외국에서도 특정한 오염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조치일 뿐 전국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으며, 잦은 법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임(상공자원부).

- 공공수역내 기름 등의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 제거명령, 대집행 및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해 사고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공공예산 절감을 추진할 방침임(행정쇄신위원회).

: 한겨레 94.10.19., 20면; 한국 94.10.20., 17면; 한겨레 94.11.14., 2면; 한겨레 94.11.18., 2면; 한겨레 94.11.19., 14면; 세계 94.11.20., 2면; 한겨레 94.11.24., 5면; 동아 94.11.24., 3면

○ 물관리관련 입법의견

-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자원세를 신설해야 함(조일현 신민당 의원).

- ①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치수 및 규제위주의 「하천법」과 「특정다목적댐법」, 「풍수해대책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부분·목적별 관리를 위한 법의 정비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고, ②낙동강의 유하현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수량관리(건설부)·수질관리(환경처)·수방관리(내무부) 등의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자원청'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지역별로 하천관리사무소를 두어 유역별 하천관리에 나서는 한편 기존의 환경처는 수질규제만 전담하도록 할 경우 수질과 수량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환경관계 전문가들).

: 국민 94.11.4., 4면; 중앙 94.11.29., 8면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견

- 응급환자의 진료거부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응급구호센터를 설립하겠음(서상목 보건사회부장관).

- ①의료분쟁소송은 조정신청과 소송 가운데 선택해서 제기하게 하고, ②피해자와 4촌이내의 친족만 의료분쟁조사 및 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폐지하며, ③특히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제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만으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면책조항도 형의 경감만을 참작해 주도록 수정함. ④이와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무한보상책임을 대통령령으로 배상범위와 한도 등을 정하는 유한보상책임으로 완화하고, ⑤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학계·언론계 인사들을 포함시키기로 함(보건사회부 의료분쟁조정법수정안).

- 의료분쟁 조정기간을 1백50일에서 90일로 단축함(국회 보사위).

: 동아 94.10.26., 2면; 경향 94.10.26.,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62~63면) · 제7호(71면) · 제13호(92~94면) · 제94-3호(124면) · 제94-5호(127~128면) 참조

○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쓰레기 감량을 위해 ①폐기물 활용률을 92년 7.9%에서 97년 20%, 2001년 3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②일반쓰레기 봉투를 지정 판매하며, ③1회용품 및 포장재 규제를 확대하고, ④집단급식소에 퇴비시설설치를 의무화하며, ⑤유리·종이·플라스틱·강재 등의 폐자원 사용목표율을 업종별로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⑥쓰레기 발생지에서 처리도 책임지도록 일원화함(박윤혼 환경처장관).

: 중앙 94.10.13.,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2면)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원등에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①지역별로 처리시설을 필수 기본시설로 확보하도록 하고, ②시설을 현대화하며, ③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보상적 특별지원을 하는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원등에대한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함(박윤혼 환경처장관).

: 중앙 94.10.13.,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6면) · 제13호(95~96면) 참조

○ 환경오염공익관련시설에대한 입법의견

- 병원, 아파트,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이 환경오염행위를 해도 현실적으로 조업정지가 어려운 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오염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

해 공익관련 시설이 오염행위를 할 때는 과징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행정
쇄신위원회).

: 서울 94.11.13., 8면

◎ 法院 · 法務

○ 검찰청법 개정의견

- 「검찰청법」상 검사는 단독관청인데도 상명하복에 묶여 위로부터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독립성을 침해받고 있음. 직무를 제외한 행정사무에 국한해 내부
결재를 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해야 함(조순형 민주당의원).

: 조선 94.10.21.,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63면) · 제94-5호(129면) 참조

○ 공소시효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12·12의 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프랑스나 독일 등이 제2차 세계대전 뒤
전범처리를 하면서 공소시효를 연기한 것처럼 「공소시효특례법(가칭)」 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이돈명 전 조선대 총장).

: 한겨레 94.11.17., 4면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적 활동을 막는 방어적 법이며 최근 북한의 대남전술 등
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므로 폐지나 기본 골격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음
(김두희 법무부장관).

: 세계 94.11.1.,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8면) 참조

○ 국적법 개정의견

- 국제화에 뒤떨어진 「국적법」을 개정하여 양계혈통주의의 채택 · 이중국적문제
와 관련된 국적선택제의 도입, 국적상실자의 권리양도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임(김두희 법무부장관).

: 서울 94.10.15.,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97면) 참조

○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내부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부패의 실상을 고발하게 하고 그 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이 필요함(장석화 의원).
- 구조적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감사원에 내부비리제보 접수 및 조사를 맡는 전담부서 설치, ②비리를 발견하거나 제의를 받은 공무원의 고발의무 명시, ③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포상을 하도록 하고, 이는 민간기업체, 사회단체도 포함하도록 함(참여민주사회와인권을위한시민연대).

: 한겨레 94.10.18., 4면; 한겨레 94.10.29., 2면

○ 동성동본불혼 민법 개정의견

- 현행 '동성혼 등의 금지' 규정인 「민법」 제809조를 '근친혼 금지' 조항으로 개정해 현재 부계는 동성동본간, 모계는 8촌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혼인금지 범위를 부계·모계 모두 8촌 이내로 조정함(여야 국회의원).
-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폐지는 시대적 추세임(이우정 민주당의원).

: 한겨레 94.10.27.,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5호(129~130) 참조

○ 무고·음해문화관련 입법의견

- 고소·고발사건을 무조건 접수 처리하는 현제도에서 벗어나 일본처럼 선별접수하는 고소장심사제의 도입이 필요함(황선태 서울지검 조사부장).
- ①민사사건의 유리한 해결을 위해 형사재판이 이용되고 있는 현 법절차의 미비점과 고소·고발자체가 상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며, ②동일사안에 대한 상습 고소·고발사건은 일선 경찰이 아닌 상급수사기관에서 전담 처리한 뒤 무고혐의가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고, ③의명·가명제보를 일절 수사하지 않고 무고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이상업 경찰청 수사과장).

: 경향 94.11.16., 1면

○ 법원 및 법무사비리관련 입법의견

- ①법원·검찰·헌법재판소직원이 일정기간(7급이상 7년, 5급이상 5년)만 재직하면 법무사자격을 주던 관행에서 탈피, 재직중 비위행위사실을 법무사 자격심사때 반영하는 한편, 법무사연수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함. ②이미 활동중인 법무사가 명의대여, 무자격사무원고용, 부당한 사건유치 등으로 과태료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았을 경우 법무사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③대법원에 특명감사반을 운영, 법무사에 대한 불시 집중감사를 벌여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방침이며, ④법무사들의 주요업무인 등기업무와 관련, 각종 등기신청을 법무사 본인이 직접하도록 하고 등기소장이 이를 확인토록 함(전국법원장회의).

: 세계 94.10.18., 25면

○ 인신보호관련 입법의견

- 긴급구속의 남용을 막으려면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영장청구기간 48~72시간을 48시간으로 줄이고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박세경 변호사).

: 한겨레 94.10.20., 20면

○ 재난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인위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 재해를 미리 막고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주민들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재해보험제도'도 도입,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사고위험이 높은 대형차량은 일정속도이상 주행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기 등을 달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벌칙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함(감사원장 자문기구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①부처별로 난립돼 있는 재해관련업무를 신설될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일원화하여 각종 재난의 신고접수에서부터 인력 및 장비지원, 응급조치, 부처간 업무조정, 예산확보, 제도보완 등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②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정을 거쳐야 하는 재원조달의 번거로움을 줄

이기 위해 국가 및 시·도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기로 하며, ③방재연구소를 신설, 평상시 재해예방조치와 피해최소화를 위한 방재체계·시스템개선 등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난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정부).

- 재난관리 전담조직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관행정력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외청 같은 별도 부서보다는 총리직속의 '힘있는 기구'로 두는게 효과적이고, 안전점검·사후수습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건설단계의 부실요인에 대해서까지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국민일보 사설).
- 재난관리전담기구는 감사원처럼 대통령직속으로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야 하고, 그 구성원의 핵심지도부는 공무원이 아닌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함(한국일보 사설).

: 서울 94.10.27., 2면; 한국 94.10.31., 1면; 국민 94.10.31., 3면; 한국 94.11.1., 3면

○ 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 가운데 비밀사항, 의사결정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 내용이 모호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게 잡고 있어 입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중앙일보 해설).
- ①「정보공개법(가칭)」 시안의 '공개제외 대상정보'가 9개항이나 되는 데다 조문의 표현까지 애매하여 입법취지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며, ②국가기밀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고, 국가기밀은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③불법적 정보누출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면서 부당한 공개거부에 대해서는 불복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만 둔 것은 문제임(국민일보 사설).
- 정부가 공개할 정보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소지가 있고, 국가기밀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의 불복 심사를 담당할 정보공개위원회를 민간 위주로 구성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김철수 서울대 법대교수).
- 비밀사항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제약할 소지가 있음(박지원 민주당의원).

- ①공개제외대상정보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해석됨으로써 공개거부를 합법화 해 주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②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손질해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목록을 따로 작성해야 하고, ③비밀정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는 것으로 해야 함(세계일보 사설).
- 「정보공개법(가칭)」이 시행되더라도 정보청구대상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해 일단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불복심사나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는 동안 청구한 정보의 효용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함(경향신문 해설).
- 정보공개가 과연 어느 단계부터 가능한가도 불명확하며, 벌칙규정도 정보의 부당한 공개만 엄벌하게 되어 있을 뿐 정작 공직자들의 고의적 또는 태만 등에 의한 공개기피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도 없음(중앙일보 해설).
: 중앙 94.10.12., 3면; 국민 94.10.13., 3면; 한겨레 94.10.13., 1면; 세계 94.10.14., 3면; 경향 94.10.13., 5면

○ 증인및피해자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범죄신고자에 대한 주변안전조치, 소속직장에서의 불이익금지, 범죄신고 및 진술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손실보상, 보복에 대비한 신변보호와 이사·전업·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및피해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함(김두희 법무부장관).
- 피해자나 증인들이 피고인측의 협박과 공갈에 놀려 법정증언을 피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선진국형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마련, 강력범죄의 경우 수사중에는 물론이고 수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수사관을 붙여 신변을 보호하는 등 사후신변안전까지 보장해야 함(홍준표 서울지검 강력부검사).
- 현행 법률은 증인의 신분이 범인에게 완전히 노출된 뒤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자 및 피해자가 법정에서 나와 피고인들이 보는 앞에서 증언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유리벽을 법정 안에 설치하거나, 이들의 증언내용을 비디오테이

프로 녹화하고, 「형사소송법」에서의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가 법정에서 다시 나와야만 하는 '전문 증거' 조항을 완화해,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방향 등을 검토함(법무부, 검찰).

- 범죄피해자나 증인의 보호를 위해 우선 서면증언이나 비공개 증언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보전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자나 증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은 증벌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며,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의 도입도 필요함(국무회의).

: 세계 94.10.12., 26면; 서울 94.10.15., 1면; 중앙 94.10.18.,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5호(130면) 참조

○ 형법 개정의견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컴퓨터범죄 형량이 일반형사 범죄보다 20%정도 높으나 「형법」개정안은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량을 일반형사범죄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어 신종컴퓨터범죄의 대책으로서는 미흡함(노연호 대검전산실장).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침입해 장애를 일으키거나 부정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와 신용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임(법무부).

: 국민 94.10.20., 18면; 한겨레 94.11.15.,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8면) 참조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일상생활에서 늘 되풀이되는 가벼운 사건과 강력사건처럼 기동성 있게 대처해야 할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차용석 한양대교수).
- 모든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 간섭을 받게 되어 있어 경찰의 사기와 수사의 능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모든 범죄발생과 진압에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법적인 권한이 전무한 모순된 법제도는 개정되어야 함(이관희 경찰대교수).

- 책임에는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권한은 검사가 가지고 책임은 경찰이 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로 개정하여 경찰에게도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 함(이영란 교수, 숙명여대 법학과).
- 지난 54년 제정된 재정신청제도가 유신 초기인 73년 검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축소·변질된 만큼 원상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당사자가 기소 여부를 고등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함(한인섭 경원대 법학과교수).
-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는 대신 기소를 의무화하는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해야 하며, 일정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을 개정한 뒤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함. 검찰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리도록 해야 함(이석연 변호사).
- 검찰의 일방적인 불기소처분 방지규정을 관련법에 마련해야 하며, 특히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쿠데타, 권력형 부정부패등 중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검찰이 기소하도록 해야 함(민주당).

: 한겨레 94.11.2., 3면; 중앙 94.11.18., 2면; 세계 94.10.21., 5면; 조선 94.10.21.,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21~122면)·제12호(110면)·제13호(105~106면)·제94-1호(85면)·제92-2호(116~117면)·제94-5호(131~132면) 참조

II. 주요입법예고법률안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 목록

(1994.10.11.~1994.12.10)

- ◎ 內務 · 地方行政 124
 -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광진구등8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 · 광역시 · 도간관할구역변경
등에관한법률안
 -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 지방자치법중개정안

- ◎ 社會 · 文化 · 教育 128
 - 영상진흥기본법제정안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 産業 · 經濟 130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안

- ◎ 農林 · 水産 131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농촌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종묘관리법개정법률안
 - 주요농작물종자법개정법률안

◎ 建設	134
○ 도로법개정안	
◎ 環境·保健	135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法院·法務	13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 내용

(1994.10.11.~1994.12.10)

◎ 內務 · 地方行政

○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0.25

1. 개정이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금융자료 조회의 요건을 완화하고, 재산등록대상직계존비속의 범위조정, 등록기관의 확대, 불성실등록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 마련 등 미비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공직자 윤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자 가운데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재산등록대상 범위에서 제외토록 함.

나. 재산등록의무자가 대폭 확대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금융재산에 대한 실질적·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었으나 성실등록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등록의무자가 등록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하도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개내용을 현실화 함.

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의 심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한 때에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외 이용,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때에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12월중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1월중 퇴직한 경우의 신고방법, 등록의무자 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한 경우의 공개방법,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절차 등 재산등록·공개 및 변동신고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광진구등8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안

예고일자 : 1994.11.18 (내무부공고제1994-85호)

1. 제정취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시도간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3개 광역시의 8개 과대자치구를 분할하여 8개 자치구를 증설하고, 인천광역시 북구의 명칭을 부평구로 변경함.

-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동구, 광진구
- ②서울특별시 도봉구 → 도봉구, 광북구
- ③부산광역시 동래구 → 동래구, 연제구
- ④부산광역시 남구 → 남구, 수영구
- ⑤부산광역시 북구 → 북구, 사상구
- ⑥인천광역시 남구 → 남구, 연수구
- ⑦인천광역시 북구 → 부평구, 계양구
- ⑧광주광역시 서구 → 서구, 남구

나. 경상남도 양산군의 기장읍·장안읍·철마면·일광면 및 정관면 일원을 부산광역시로 편입하여 기장군을 설치함.

다. 경기도의 관할구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대부면 제외)을 각각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경상북도의 달성군을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함.

라.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이 비합리적인 8개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변경함.

①서울특별시 개봉·천왕동 일부 → 경기도 광명시

②인천광역시 북구 서운동 일부 → 경기도 부천시

③경기도 광명시 철산·광명·하안·소하동 일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④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일부 → 서울특별시 은평구

⑤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일부 → 강원도 원주시

⑥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 → 충청남도 연기군

⑦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갈산리 → 충청북도 청원군

⑧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일부 → 경상북도 울진군

3. 참고사항

가.에 따라 “직할시”를 “광역시”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시 설치등에관한법률(’95. 1. 1. 시행)에 따라 “원주군”을 “원주시”로, “삼척군”을 “삼척시”로 표기함.

○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예고일자 : 1994.11.18 (내무부공고제1994-86호)

1.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권이 동일한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라남도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하여 광양시를 설치함.

나. 경상남도 울산시와 울산군을 통합하여 울산시를 설치함.

○ 지방자치법중개정안

예고일자 : 1994.10.15 (내무부공고제1994-76호)

1. 개정취지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실시로 맞게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을 보강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완화·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신장하는 한편, 기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할시”를 “광역시”로 용어를 변경·정비함.

나. 관할구역안에 자치구와 군을 두는 도농복합형태의 광역시제를 도입함.

다.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설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던 것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함.

라. 지방의회 감·조사권의 과잉행사를 방지하고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참고인을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제한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농·수·축협 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과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을 추가하고, 기타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추가함.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근거로 현행 규정의 조례 외에 규칙을 추가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사·감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함.

사.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기구의 설치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지방자치단체가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자. 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차.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도 199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재임하도록 함.

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 6개월로 함. 또는 “광역시장”으로 보도록 하고, 특별규정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삭제함.

◎ 社會 · 文化 · 教育

○ 영상진흥기본법제정안

예고일자 : 1994.10.13 (문화체육부공고제1994-75호)

1. 제정이유

21세기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국내의 경제적, 문화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영상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 문화적, 산업적 가치가 큰 ‘영상저작물과 제작기술’에 대한 육성근거와 지원 체계를 총괄하는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 영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고 영상문화진흥의 기틀을 다지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목적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나. 적용범위 규정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나 지원체계와 근거가 취약한 “영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 제작기술”을 그 대상으로 함.

다. 창작의 자유보장

국가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함.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과 관련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문화·산업진흥에 관

한 다른 법률은 이 법의 기본정신을 개별법에서 반영토록 함.

마. 영상진흥계획의 수립

-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영상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함.
- 정부는 영상문화·산업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은 관계부처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

바. 법제상의 조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달성과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정부시책의 구체화를 위한 의무규정 명시문화의 주체성 유지와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한 영상물의 진흥, 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화 사항의 지원 등

아. 영상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상진흥재원의 운용방안을 강구함.

자. 영상자료의 관리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영상물의 수집, 보존 및 관리에 힘써야 함.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1.4 (문화체육부공고제1994-79호)

1. 개정이유

비디오물감상실업(속칭 '비디오방' 영업)을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유도·정착시키기 위해 일정시설을 갖추어 등록토록하고 운영기준을 준수케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시청시설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시청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비디오물 감상실업자'로 규정함.

나.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시설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함.

다. 비디오물 감상실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産業 · 經濟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안

예고일자 : 1994.11.22 (건설부공고제1994-281호)

1. 제정이유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유통시설 확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유통단지를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등의 유통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함.

나. 유통단지의 지정·개발 등 유통단지 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유통단지심의회를 두도록 함.

다. 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유통단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유통시설용지의 수급, 유통단지의 배치 등에 관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토록 함.

라. 유통단지는 건설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유통단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유통단지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유통단지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함.

마.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조합 및 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한 법인중에서 유통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로 정함.

바. 사업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 유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인도록하고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분할, 형질변경허가등 18개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함.

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도로, 철도, 항만, 용수, 폐기물처리시설등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함.

아. 사업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체 등이 분양받은 부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토록 함.

자. 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유통단지관리지침을 작성한 후 유통단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관보에 고시

차. 유통단지의 관리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별도의 기구에서 하도록 하되, 사전에 유통단지의 면적 및 범위,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유통단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타.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農林·水産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0.27 (농림수산부공고제1994-66호)

1. 개정취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저율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게 함.

나.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을 받아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

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농림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에 납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생산자 단체가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제10조의3에 의한 수입이익금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납입되는 금액을 포함시킴.

라. 시장접근물량의 사용용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촌진흥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2.9 (농촌진흥청공고제1994-19호)

1. 개정이유

농업의 국내의 여건변화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체 실시와 관련하여 농촌지도사업과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을 명백히 하고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농촌진흥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내의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험연구사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의 정의를 명백히 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확대 규정함.

나. 지방자치단체에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농촌진흥청장은 지방연구기관의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연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에서 개발된 기술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중앙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라. 농촌진흥청장은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관, 대학교수 및 민간인,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시책을 건의할 수 있게 함.
- 사.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상품화하여 개발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기술사용료는 농업산학협동기금에 적립하여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
- 아.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연구기관이 연구개발한 결과를 특허법에 의거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등록 이전이라도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조기 실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자. 농촌진흥청장은 민간연구기관, 민간기업, 농업인과의 협동으로 농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종묘관리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0.29 (농림수산부공고제1994-68호)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소

- 가. 종묘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종묘상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 나. 종묘의 수출입을 종묘업자만이 할 수 있게 한 자격제한 규정을 완화
- 다. 종묘생산지역의 지정고시를 폐지하고, 외국산 종묘가 수입될시 국내적응성 시험을 거쳐 판매토록 함.
- 라. 저울관세 양허물량에 대한 수입 추천제 신설
- 마. 수입종자에 대한 증지첨부제 폐지
- 바.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시 청문제도 신설로 민주적 행정절차 마련
- 사. 벌금액은 타 법률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상향조정

○ 주요농작물종자법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0.28 (농림수산부공고제1994-69호)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지

- 가. 종자판매업은 농림수산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여 경제행정규제완화
- 나. 주요농작물종자의 수출입을 추천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되 국내에 처음 수입하여 판매보급하는 종자는 사전에 적응성시험을 거치도록하여 불량종자 수입에 의한 피해방지 도모
- 다. 국내생태계보호 및 자원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자의 수출입 및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농업환경 및 우수유전자원보호조치 강구
- 라.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해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
- 마. 이 법에 의한 종자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하여 벌금액을 현실화
- 바.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시 청문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권익보호 도모

◎ 建設

○ 도로법개정안

예고일자 : 1994.11.11 (건설부공고제1994-276호)

1. 개정사유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적차량 단속공무원(도로관리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과적의 근절을 위해 위반차량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과적차량단속 공무원인 도로관리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나.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차량(과적차량)을 운행한 자 및 운행제한 위반여부 확인에 불응한 자와 그 법인의 대표자, 사용자 등에게는 현행 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環境・保健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1.30 (환경처공고제1994-77호)

1. 개정취지

환경처공고 제1994-57호('94.9.8.)로 입법예고 한 바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에 덧붙여 현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도를 일정규모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골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하의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함.

◎ 法院・法務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자 : 1994.11.8 (법무부공고제1994-16호)

1. 개정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직원의 지방세등 횡령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를 국고손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손실발생의 경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Ⅲ. 최신법령 목록

(1994.10.11.~1994.12.31)

공 포 변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법 률 478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4.11. 1
4786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	1994.11.11
478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	1994.11.11
4788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법률	1994.11.11
4789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1994.12.20
479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4.12.22
479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1994.12.22
4792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	1994.12.22
4793	수난구호법개정법률	1994.12.22
4794	지방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4795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	1994.12.22
4796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1994.12.22
4797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4.12.22
4798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4.12.22
4799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00	소방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01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1994.12.22
4802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1994.12.22
4803	소득세법개정법률	1994.12.22
4804	법인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4805	상속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06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07	토지초과이득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08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09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10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11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12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13	관세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14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15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16	산림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17	농지법	1994.12.22
481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19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20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21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22	임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23	농어촌정비법	1994.12.22
482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1994.12.22
482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994.12.22
48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법률	1994.12.22
4827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28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법률	1994.12.22
4829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4.12.22
483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994.12.22
4831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1994.12.23
4832	인삼사업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33	은행법중개정법률	1994.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일일
4834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35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	1994.12.31
4836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1994.12.31
4837	법률구조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38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39	군인사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40	병역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41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42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43	축산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44	잠업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45	주요농작물종자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46	종묘관리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4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	1994.12.31
4848	산림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49	사료관리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50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52	약사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53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54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	1994.12.31
4855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4.12.31
4856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1994.12.31
4857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4.12.31
조 약 1247	대한민국정부와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정부 간의사증면제에관한교환각서	1994.10.18
1248	대한민국정부와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문화협정	1994.10.2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249	대한민국정부와폴란드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정	1994.10.24
1250	대한민국정부와폴란드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	1994.10.24
1251	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력에관한협정	1994.11. 4
125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항공운수에관한잠정협정	1994.11. 7
1253	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정부간의사증면제에관한협정	1994.11. 7
1254	대한민국정부와베네수엘라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에대한사증면제에관한교환각서	1994.11.17
1255	대한민국정부와히지공화국정부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1994.11.22
1256	대한민국정부와파푸아뉴기니정부간의대의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1994.11.25
1257	대한민국정부와스페인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1994.11.25
1258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간의군사위원회및한미연합군사령부관련약정의개정에관한교환각서	1994.12.10
1259	대한민국정부와튀니지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4.12.29
1261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대의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1994.12.29
1262	대한민국정부와미얀마정부간의대의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1994.12.29
1263	대한민국정부와안티구아바류다정부간의사증명제에관한교환각서	1994.12.29
1264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	1994.12.30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1265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WTO 협정)	1994.12.31
대 통 령 령 14400	하천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0.11
14401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0.15
14402	대학학생정원령중개정령	1994.10.15
14403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0.15
14404	공중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0.18
14405	동계국제종합경기대회지원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4.10.21
14406	비상기획위원회규정개정령	1994.10.21
14407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개정령	1994.10.29
1440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1994.10.29
14409	사망사업법시행령개정령	1994.11. 3
14410	수출보험법시행령개정령	1994.11. 5
1441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1. 9
144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1. 9
1441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1.10
1441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규정	1994.11.12
144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11.14
14416	대검찰청의위치및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4.11.26
14417	정무장관실직제중개정령	1994.11.26
14418	수로국직제중개정령	1994.11.26
1441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1994.11.30
14420	도시철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1.30
14421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4.12. 1
14422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 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423	군인복제증개정령	1994.12. 1
14424	광업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 8
14425	노동통계심의위원회규정	1994.12. 9
14426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증개정령	1994.12.12
144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증개정령	1994.12.12
14428	중소기업사업조정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14
14429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시행령증개정령	1994.12.16
14430	군무원인사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19
14431	국방조직및정원에 관한통칙증개정령	1994.12.19
14432	수의사법시행령개정령	1994.12.19
1443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19
14434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규정	1994.12.22
14435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시행령	1994.12.23
14436	지방공무원보수규정증개정령	1994.12.23
14437	석탄산업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23
14438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14439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40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4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42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43	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1994.12.23
14444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1994.12.23
14445	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46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47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14448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49	과학기술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50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51	공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452	행정조정실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53	공정거래위원회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54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23
14455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1994.12.23
14456	차관회의규정증개정령	1994.12.23
1445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 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증개정령	1994.12.30
14458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증개정령	1994.12.30
1445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증개정령	1994.12.30
1446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1994.12.30
14461	전염병예방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0
1446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증개정령	1994.12.30
14463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증개정령	1994.12.30
14464	관세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14465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 규정개정령	1994.12.31
14466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 율변경에관한규정개정령	1994.12.31
14467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1994.12.31
14468	법인세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14469	상속세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14470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1447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14472	특별소비세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14473	국세기본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14474	국세징수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1447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14476	농·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 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증개정령	1994.12.31
14477	인삼사업법시행령증개정령	1994.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478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개정령	1994.12.31
14479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1994.12.31
14480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1994.12.31
1448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82	지방양여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83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1994.12.31
14484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1994.12.31
14485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4.12.31
14486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 중개정령	1994.12.31
14487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 지급규정중개정령	1994.12.31
14488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89	양곡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90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91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9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1994.12.31
14493	하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94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95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9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1994.12.31
14497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법률시행령	1994.12.31
14498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499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4.12.31
14500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	1994.12.31
14501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	1994.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502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1994.12.31
14503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94.12.31
14504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1994.12.31
14505	보훈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50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1994.12.31
1450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12.31
14508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4.12.31
총 리 령 468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0.14
469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11
470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11
471	공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11.12
47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중개정령	1994.11.15
47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11.21
474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21
475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규칙	1994.12.19
476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12.31
477	인삼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1
47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1
479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1
48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1
481	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4호및동법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1994.12.31
48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4.12.31
483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12.31
484	관세법제12조의3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1994.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48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4.12.31
486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내 무 부 령 628	선박안전조업규칙 중 개정령	1994.10.15
629	소방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0.27
630	행정협회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 중 개정령	1994.12. 8
631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령	1994.12.22
633	지방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63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635	지방양여금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636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637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63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994.12.31
63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재 무 부 령 200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0.29
2005	관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1. 8
2006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1. 8
2007	법률제4674호 관세법 중 개정 법률부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중 개정령	1994.11.11
2008	관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94.11.22
법 무 부 령 387	어음교환소지정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1994.12.26
388	검찰징수사무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389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390	검찰보고사무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391	검찰집행사무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392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393	검찰사건사무규칙 중 개정령	1994.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39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중개정령	1994.12.31
국 방 부 령	450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1994.10.15
	451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20
	45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29
	453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0
교 육 부 령	656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 8
	657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1
문화체육부령	17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 7
	18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11.26
농림수산부령	1155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0.13
	1156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1994.10.15
	115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0.20
	1157 수입식품검역규칙중개정령	1994.11. 7
	1159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 3
	1160 사망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1994.12. 6
	116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15
	1162 공동어장낚시터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12.22
	1163 식물방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23
	1164 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26
	1165 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1
	1166 잠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1
상공자원부령	48 수출보험법시행규칙개정령	1994.11. 5
통상산업부령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29
	2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3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개정령	1994.12.30
건설부령 56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0.14
566	측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0.19
567	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	1994.11. 2
568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1994.11. 2
569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 5
570	하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 2
57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 8
572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 7
573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12. 9
574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개정령	1994.12.22
보건사회부령 949	한국한의학연구소법시행규칙	1994.10.28
보건복지부령 1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1994.12.30
노동부령 95	최저임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14
96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15
교통부령 1032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1994.10.15
1033	철도청직원복제규칙중개정령	1994.10.31
1034	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17
1035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19
1036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1.30
103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12.30
1038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개정령	1994.12.22

국내입법의견조사 94-6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1994년 12월 25일 印刷

1994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